2026. 6. 20. 시행 법원사무직 · 등기사무직

기출해설 특강

26년 6월 20일(토) 법원직 · 등기직 시험 해설 강의 일정

- 강의실 : 써밋 303호 -

과목(교수님)	일 정	강의실
민법(이준현)	6/22(월) 14:00~16:00	써밋 303호
형사소송법(이준현)	6/22(월) 16:00~18:00	써밋 303호
헌법(정인홍)	6/22(월) 19:00~21:00	써밋 303호
국어(신동수)	6/23(화) 09:00~11:00	써밋 303호
영어(이아람)	6/23(화) 11:00~13:00	써밋 303호
김기찬(등기법)	6/23(화) 14:00~16:00	써밋 303호
상법(이상수)	6/23(화) 16:00~18:00	써밋 303호
민소법(이영민)	6/24(수) 11:00~13:00	써밋 303호
한국사(정우교)	6/24(수) 14:00~16:00	써밋 303호
형법(박지용)	6/24(수) 16:00~18:00	써밋 303호

법원사무직 · 등기사무직 이준현 채움팀

채움 면접특강

예비 면접특강	7/6(월) 14시, 7/8(수) 14시 예비 면접특강 - 면접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본 면접특강	7/11(토) ~ 7/13(월) 자기소개서 작성 및 인성검사 대비 테스트 7/15(수) ~ 7/30(목) 자기기술서 작성 및 개별 면접 진행 시작
강의 대상	법원직 · 등기직 필기합격자!!
강의 장소	박문각 써밋타워 303호(강의실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강의 수강료	15만원 (교재비 포함)
강의 내용	① 30년의 노하우, 법원 · 등기직 면접에 맞춘 맞춤 면접 ② 실제 면접질문 내용을 토대로 한 개별면접 교육 ③ 스터디 그룹 편성, 조별 면접 교육 ④ 인성검사 대비 테스트

합격예측 풀서비스

일정	6월 20일(토) 18시 이후(가답안 발표 후)
대상	법원직 · 등기직 필기시험 응시자
홈페이지 URL	박문각 법원검찰 https://www.pmg.co.kr/user/pao/event/event_250519.asp
* 수험생 본인 개별 성적 확인, 성적분석 통계 데이터 제공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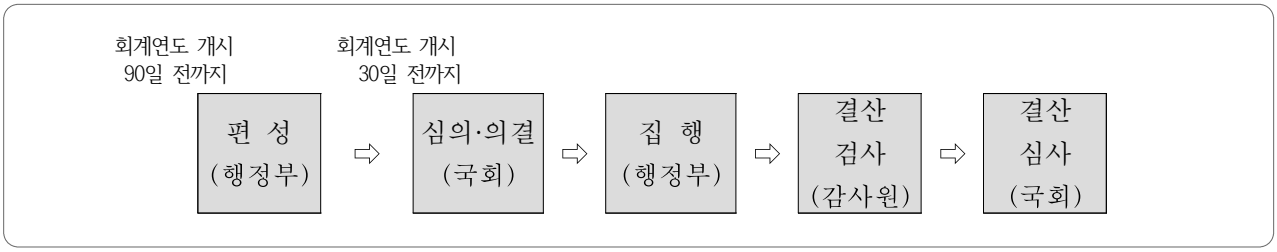
헌 법

정인흥 교수(박문각 전임교수)

1. 국회의 정족수

10인 이상	· 회의의 비공개발의(국회법 제75조 제1항) · 일반의안의 발의(국회법 제79조 제1항)
20인 이상	·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에 대한 출석요구 발의(국회법 제121조 제1항) · 징계요구(국회법 제156조 제3항) · 긴급현안질문요구(국회법 제122조의 3) · 의사일정의 변경발의(국회법 제77조) · 교섭단체의 성립(국회법 제33조)
30인 이상	· 자격심사의 청구(국회법 제138조) · 일반의안 수정동의(국회법 제95조 제1항) ·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본회의 부의(국회법 제87조 제1항)
50인 이상	·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국회법 제95조 제1항 단서)
재적과반수, 최고득표자	· 국회에서 대통령 선출(헌법 제67조 제2항), 의장·부의장결선투표, 임시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재적1/5 이상	· 위원회의 개회(국회법 제54조) · 본회의 개의(국회법 제73조)
재적1/4 이상	· 임시회 소집요구(헌법 제47조 제1항) · 전원위원회 요구(국회법 제63조의 2) · 위원회의 개회 요구(재적위원의 1/4 이상) (국회법 제52조) · 휴회 중의 본회의 재개요구(국회법 제8조 제2항) · 의원의 석방요구 발의(국회법 제28조) · 국정조사 발의(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재적1/3 이상	· 해임건의 발의(헌법 제63조 제2항)·일반 탄핵소추 발의(헌법 제65조 제2항)·무제한 토론의 실시(국회법 제106조의2 제1항) ·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국회법 제106조의2 제6항)
출석 과반수	· 비공개 회의 의결(헌법 제50조 제1항)
재적 과반수	· 의장·부의장 선출(국회법 제15조 제1항) · 해임건의(헌법 제63조 제2항)·계엄해제 요구(헌법 제77조 제5항) · 헌법개정안 발의(헌법 제128조 제1항) · 일반 탄핵소추의 의결(헌법 제65조 제2항)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동의(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
재적과반수, 출석과반수	·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일반적 결의(헌법 제49조)
재적과반수, 출석2/3이상	· 법률안재의결(헌법 제53조 제4항) · 번안(국회법 제91조 제1항 제2항)
재적2/3 이상	· 제명(헌법 제64조 제3항)·자격심사(무자격결정)(국회법 제142조 제3항) · 헌법개정안 의결(헌법 제130조 제1항)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
제적3/5 이상	· 무제한 토론의 종결(국회법 제106조의2 제6항)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

2. 예산과 결산 절차



3. 국가기관의 임기 비교정리

(1) 국회

① 국회의원 : 4년

② 국회의장, 부의장 : 2년

③ 상임위원 : 2년

④ 예산결산특별위원 : 1년

(2) 행정부

① 대통령 : 5년(중임 불가능)

② 감사원장, 감사위원 : 4년(1차에 한하여 중임 가능)

③ 중앙선거관리위원 : 6년

(3) 법원

① 대법원장 : 6년(중임 불가능)

② 대법관 : 6년(연임 가능)

③ 판사 : 10년(연임 가능)

(4) 헌법재판소

① 헌법재판소장 : 규정 없음

② 헌법재판관 : 6년(연임 가능)

4. 국가기관의 권한대행자 비교 정리

(1) 국회의장

① 사고 :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의장의 순 → 임시의장

② 국회의원총선거 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임시회의 집회 공고 : 사무총장

③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 최다선 의원 → 연장자

(2) 행정부

① 대통령 :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

② 국무총리 :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
→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순서

③ 감사원장 : 최장 기간 재직 한 감사위원 → 연장자

④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상임위원

(3) 대법원장 : 선임대법관

(4) 헌법재판소장

①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임명일자 순 → 연장자 순

②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
(다만,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임명일자 순 → 연장자 순)

5. 의결정족수 비교 정리

	의결정족수	가부동수인 경우
국회	재적과반수출석, 출석과반수찬성	부결
국무회의	재적과반수출석, 출석2/3이상찬성	규정 없음
감사원	재적과반수찬성	규정 없음
선거관리위원회	재적과반수출석, 출석과반수찬성	위원장이 정한다.
대법관회의	재적2/3출석, 출석과반수찬성	의장이 정한다.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 출석과반수찬성	규정 없음

6. 헌법재판 비교

위헌법률심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준용	서면심리
정당해산심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준용	구두변론
탄핵심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준용	구두변론
권한쟁의심판	행정소송에 관한 법령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준용	구두변론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에 관한 법령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준용	서면심리

7. 헌법 개정 절차

제 안	⇨	공 고	⇨	국회의결	⇨	국민투표	⇨	공 포
대통령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대통령 20일 이상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재적의원 2/3 이상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		즉시 대통령

8.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의 절차
- 제소기간의 기산점 : 선거소송은 선거일, 당선소송은 당선인결정일

대통령선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국회의원선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시도지사 선거 ----> 14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에 소청 ---->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 14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에 소청 -->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 14일 이내에 시도선관위에 소청 -->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제소
시군구청장선거 ---> 14일 이내에 시도선관위에 소청 --->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제소
시군구의원선거 ---> 14일 이내에 시도선관위에 소청 --->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제소

9. 한일어업협정(헌재 2001. 3. 21. 99헌마139 등)
(1) 이 사건 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공포한 조약(조약 제1477호)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체결행위는 고권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2)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권보장의 실질화를 위하여서는,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10.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5. 12. 18. 2021헌마1464)
- 주의 : 헌법재판소는 2018. 4. 26. 2015헌가19 결정에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법 제2조에 의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세무사법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 판례는 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인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로 개정되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조항에 대한 판례이다.

11.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1)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의 위헌 여부
병역종류조항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이외에 다른 병역의 종류나 내용을 상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위 병역들은 모두 군사훈련을 받

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종류조항에 규정된 병역을 부과할 경우 필연적으로 그들의 양심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병역의 종류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내용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불완전·불충분하다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바탕이 되는 양심상의 결정은 종교적 동기뿐만 아니라 윤리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도 형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병역종류조항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병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징병제를 유지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서도 병역의무의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한다.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병역종류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양심의 자유 중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근거가 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및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특정한 내적인 확신 또는 신념이 양심으로 형성된 이상 그 내용 여하를 떠나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이 될 수 있으므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 여부에 따르게 된다. 그리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최소한의 의무를 진다.

(4)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관용은 결코 병역의무의 면제와 특혜의 부여에 대한 관용이 아니다. 대체복무제는 병역의무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것이고 현역복무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최대한 등가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5)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의무가 인정되는 징병제 국가에서 종교적·윤리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병역거부가 '양심적', 즉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가리킴으로써, 그 반면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비양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치부하게 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 본 양심의 의미에 따를 때, '양심적' 병역거부는 실상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이지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병역의무이행은 '비양심적'이 된다거나, 병역을 이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병역의무자들과 병역의무이행이 국민의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12. 통합진보당 해산(헌재 2014.12.19, 2013헌다1)

⑴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 진보적 야당이 등록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제3차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제도는 발생사적 측면에서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성격이 부각된다. 따라서 모든 정당의 존립과 활동은 최대한 보장되며, 설령 어떤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으로서 존재하는 한 헌법에 의해 최대한 두텁게 보호되므로, 단순히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의해서는 해산될 수 없고, 오직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해산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정당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된다.

⑵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남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⑶ 정당해산의 사유

①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한다.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등은 비록 정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헌법상으로는 정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므로 그들의 행위를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겠으나, 가령 그들의 활동 중에서도 국민의 대표자의 지위가 아니라 그 정당에 속한 유력한 정치인의 지위에서 행한 활동으로서 정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행위들은 정당의 활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②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은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외연이 확장

될수록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은 확대되고, 이와 동시에 정당 활동의 자유는 축소될 것이다. 민주 사회에서 정당의 자유가 지니는 중대한 함의나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남용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행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③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은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외연이 확장될수록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은 확대되고, 이와 동시에 정당 활동의 자유는 축소될 것이다. 민주 사회에서 정당의 자유가 지니는 중대한 함의나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남용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④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⑤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한 정당은 각자가 옳다고 믿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적인 지향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오늘날 정당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에서부터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에 이르기까지 그 이념적 지향점이 매우 다양하므로, 어떤 정당이 특정 이념을 표방한다 하더라도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들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그 특정 이념의 표방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위헌적인 정당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결국 그 정당이 표방하는 정치적 이념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⑥ 강제적 정당해산은 헌법상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⑷ 어떠한 정당을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있는데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경우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

13.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헌재 2022.1.27, 2018헌마1162)

⑴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회의의 비공개를 위한 절차나 사유는 그 문언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에 대한 예외도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 제50조 제1항으로부터 일체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특정한 내용의 국회의 회의나 특정 위원회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다고 정하면서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제50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⑵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는 각 회의마다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으로 입법과정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50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14.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 탄핵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10.28, 2021헌나1).

(1)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헌법 제65조 제4항)는 점에서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나 일반 징계절차와는 성격을 달리 한다

(2) 헌법 제65조 제4항 후문 및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탄핵결정으로 인한 파면이 피청구인의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도 아니며, 헌법재판소가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하는 판단이 동일한 사실로 해당 법관이 기소된 형사소송에서 법원의 재판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다.

(3) 헌법 제65조 제4항 전문과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선고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헌법 제65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해당 공직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이는 전직이 아닌 '현직'을 의미한다.

(4)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에 의하면, 탄핵심판의 이익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탄핵결정 선고 당시까지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임기만료라는 일상적 수단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상실되었으므로, 민주적 정당성의 박탈의 관점에서도, 탄핵이라는 비상적인 수단의 역할 관점에서도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

15.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헌재 2025. 4. 10. 2024헌라8)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여서 국회의 심의·표결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바,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관한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국회의장)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 중간 생략 …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의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 이를 가결로 선포한 행위는, 그 의결정족수 적용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16.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헌재 2025. 2. 27. 2025헌라5)

1)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들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 제97조가 정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대통령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을 임명하고 있으며, 정당민주주의 하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서 해당 정당의 정책이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바, 대통령 소속기관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헌법 제97조가 정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인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헌법 및 감사원법상 감사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17.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헌재 2025. 2. 27. 2025헌라1)

(1)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의의가 헌법기관의 침해된 권한을 회복하여 헌법적 권한질서와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헌법이나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등에서 청구인(국회)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관한 절차적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국회)이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권한과 관련하여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그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와 같이 결정된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청구인(국회)을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에 기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받고 있는 데에 대한 방어적 행위로서 해당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헌법이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청구인(국회)에게 부여한 선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서, 대통령은 청구인(국회)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하는 등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사람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없으며, 다만 헌법 제111조 제2항과 헌법재판소법 제5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재판관으로 선출되거나 그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그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어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므로,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한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3) 대통령 또는 그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청구인(국회)에게 부여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임명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국 어

신동수 교수(박문각 전임교수)

- 국어의 규범과 어휘를 중심으로, 푸는 시간 줄여보기 -

1 음운 변동의 유형

음운의 변동	교체(대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되기
	첨가	사잇소리현상, 'ㄴ'첨가
	축약	모음축약, 자음축약(거센소리되기)
	탈락	자음군 단순화, 'ㅎ' 탈락, 'ㅡ' 탈락
	도치	음운 도치, 음절 도치

2 훈민정음 초성과 중성 체계

구분	제자 원리	기본자	응용자
초성(자음) 체계	발음기관 상형	ㄱ, ㄴ, ㅁ, ㅅ, ㅇ	• 가획자 → ㅋ, ㄷ, ㅌ, ㅂ, ㅍ, ㅈ, ㅊ, ㆆ, ㅎ • 이체자 → ㅇ, ㄹ, ㅿ
중성(모음) 체계	천지인 삼재 상형	·, ㅡ, ㅣ	• 초출자 → ㅗ, ㅏ, ㅜ, ㅓ • 재출자 → ㅛ, ㅑ, ㅠ, ㅕ

3 중세 국어의 특징

음운	• 오늘날에 쓰이지 않는 'ㅿ, ㆁ, ㅇ, ㆍㆆ'과 같은 문자도 있었음.(ㆁ, ㆆ은 세조 이후, ㅿ은 16c, ㅇ은 17c, ㆍ는 1933년에 각각 사라지거나 바뀜.) • 성조를 표시하는 방점이 있었음.(임진란 이후 사라짐) • 'ㅺ, ㅄ, ㅶ' 등과 같이 자음이 연속으로 둘 이상 오는 어두 자음군이 존재함. • 모음 조화 현상이 잘 지켜짐.(16c부터 흐트러지기 시작함.)
문법	• 주격 조사는 '이'와 'ㅣ'가 주로 쓰임.('가'는 17c), 명사형 어미는 '-옴/-움'이 쓰임. •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현대 국어보다 다양하게 발달함.(-시/샤-) •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존재함.(숩/줍/숩)
표기	• 받침 표기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여덟 자만 사용하는 8종성(가족용)법(표음적 표기)이 원칙이었음. • 이어적기(연철, 표음적 표기)가 일반적이었고, 16c이후 과도기 모습인 거듭적기(혼철, 중철) 표기와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적는 끊어적기(분철, 표의적 표기)도 쓰이게 됨. • 한자음은 초기에는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밝혀 적는 『동국정운』식으로 표기하다가 점차 실제 발음에 맞게 표기함.(세조 이후 동국정운식 한자음 폐기)

4 파생어와 합성어

1. 파생어

⑴ 접두사 결합 : 맏아들, 맨발, 숫처녀, 알부자, 애호박, 휘두르다, 깔보다, 드높다

⑵ 접미사 결합 : 지붕, 늙다리, 맞추다, 차갑다, 둥그렇다, 놀랍다, 진실로, 비로소, 마주

2. 합성어

⑴ 통사적(명사＋명사, 관형어＋체언, 부사어＋용언, 주어＋서술어, 목적어＋서술어, 부사＋부사, 조사 생략) : 손발, 돌다리, 길짐승, 날짐승, 맛있다, 힘쓰다, 가로지르다, 앞서다, 온종일, 죄다, 곧잘, 짊어지다.

⑵ 비통사적(부사＋명사, 어미 생략) : 부슬비, 여닫다, 높푸르다, 뛰놀다

3. 이중 복합어

⑴ 합성어의 파생 : 합성어가 파생법에 의하여 다시 파생되는 것을 말함. 결과적으로는 파생어가 됨
팽이(를)＋치(다)＋기(접사) → 팽이치기, 돌＋팔매＋질(접사), 달＋달＋이(접사) → 다달이, 샅＋샅＋이(접사) → 샅샅이, 나(고)＋들(다)＋이(접사) → 나들이, 꺾(어)＋꽂(다)＋이(접사) → 꺾꽂이

⑵ 파생어의 합성 : 파생어가 합성법에 의하여 다시 합성되는 것을 말함. 결과적으로는 합성어가 됨
돌(접사)＋배 → 돌배(파생어)＋나무 → 돌배나무(합성어), 병＋마개(막＋애) → 병마개, 통＋조림(조리＋ㅁ) → 통조림, 오이지(오이＋지)＋무침(무치＋ㅁ) → 오이지무침, 맞춤(맞추＋ㅁ)＋법 → 맞춤법

5 문장의 짜임새

⑴ 홑문장 그는 마침내 공무원이 되었다.

⑵ 겹문장

① 안은(안긴)문장

㉠ 명사절 : ~(으)ㅁ / 기
우리는 그가 정당했음을 깨달았다. / 이번에 네가 꼭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란다.

㉡ 서술절 : 주어＋주어＋서술어
토끼는 귀가 크다. / 할아버지께서는 인정이 많으시다.

㉢ 관형절 : ~(으)ㄴ / (으)ㄹ
지수가 너를 좋아했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니? ☞ 동격 관형절
이 책은 내가 읽은 책이다. ☞ 관계관형절(관형절 내 성분생략)

㉣ 부사절 : 주어＋없이 / 같이 / 달리 // -게 / 듯이 / 도록 / (아, 어)서[종속절로 볼 수도 있음]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 그곳은 그림이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 인용절 : ~라고(직접) // ~고(간접)
¶ 그녀가 "당신은 누구입니까?"라고 말했다. // 그녀가 당신 말이 옳다고 말했다. / 많이 먹으라고 했다.

② 이어진 문장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앞뒤 절의 위치를 바꿔보아도 의미가 같음
순희는 졸았지만, 나는 졸지 않았다. ＝ 나는 졸지 않았지만, 순희는 졸았다.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절의 위치를 바꾸면 의미가 다름
눈이 와서, 길이 무척 미끄러웠다. ≠ 길이 미끄러워서 눈이 왔다.

6 높임 표현의 유형

1. 주체 높임
(1) 직접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나 높임 용언 사용 : 계시다, 안 계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돌아가시다.
(2) 간접 높임: 신체 부분, 소유물, 생각을 높여 주체를 높임: '-시-', 있으시다, 없으시다
(3) 압존법: 집안에서와 사제 간 주체 높임의 제약. (◇'표준 언어 예절'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도 허용함.)

2. 객체 높임: 목적어・부사어 높임: 모시다, 뵙다(뵈다) / 드리다, 여쭙다(여쭈다)

3. 상대 높임법

등급 \ '가다'의 예		명령법	평서법	의문법	청유법	감탄법
격식체	합쇼체(아주높임)	가십시오	가십니다	가십니까?	(가시지요)	—
	하오체(예사높임)	가(시)오	가(시)오	가(시)오?	갑시다	가는구려!
	하게체(예사낮춤)	가게	가네(감세)	가는가/가나?	가세	가는구먼!
	해라체(아주낮춤)	가거라/가라	간다	가(느)냐/가니?	가자	가는구나!
비격식체	해요체(두루높임)	가(세/셔)요	가요	가(세/셔)요?	가(세/셔)요	가는군요!
	해체(두루낮춤	가/(가지)	가/(가지)	가/(가지)?	가/(가지)	가는군!

7 표준 발음 (10제)

1. 첫째 음절 '의'는 [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 '니'는 [l]로 발음함. 첫째 음절 이외의 '의'는 [l]를 허용하고, 조사 '의'는 [네]로 발음함도 허용함.

➡ 의사[의사] // 늴리리[닐리리], 유희[유히] // 내의[내 : 의 / 내 : 이] // 우리의[우리의 / 우리에]

2. 겹받침 'ㄻ'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함.

➡ 여덟[여덜], 넓다[널따], 넓네[널레], 짧다[짤따], 짧네요[짤레요], 얇고[얄 : 꼬], 얇지[얄 : 찌]

다만,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고, '넓-'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함.

➡ 밟다[밥 : 따], 밟고[밥 : 꼬], 밟지[밥 : 찌], 밟는[밥 : 는 → 밤 : 는] / 넓-죽하다[넙쭈카다], 넓-적하다[넙쩌카다], 넓-둥글다[넙뚱글다], 넓-적다리[넙쩍따리]

☆ '널따랗다, 널찍하다, 짤따랗다, 얄따랗다, 얄찍하다, 얄팍하다' 등은 표기에 반영함.

3. 겹받침 'ㄺ'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함.

➡ 맑다[막따], 읽지[익찌], 갉작갉작하다[각짝깍짜카다], 굵다랗다[국따라타], 굵직하다[국찌카다], 긁적거리다[극쩍꺼리다], 늙수그레하다[늑쑤그레하다], 얽죽얽죽하다[억쭈걱쭈카다], 흙과[흑꽈]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ㄺ'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함.

➡ 맑게[말께], 묽고[물꼬], 늙게[늘께], 얽거나[얼꺼나], 읽고[일꼬], 읽겠습니다[일껟씀니다]

4. 'ㅎ(ㄶ, ㅀ)' 뒤 'ㄱ / ㄷ / ㅈ'이 결합되면 [ㅋ / ㅌ / ㅊ], 'ㅅ'이 결합되면 [ㅆ], 받침 'ㄱ(ㄺ)' / 'ㄷ' / 'ㅂ(ㄼ)' / 'ㅈ(ㄵ)'이 뒤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합쳐서 [ㅋ / ㅌ / ㅍ / ㅊ]으로 발음함.

➡ 닳지[달치], 끊기다[끈키다], 까맣소[까 : 마쏘] // 맏형[마텽], 육학년[유캉년], 낮 한때[나탄때], 꽃 한 송이[꼬탄송이], 몇 할[며탈], 온갖 힘[온 : 가팀], 부딪히다[부디치다](☆ 부딪치다[부딛치다])

다만, 'ㅎ(ㄶ, ㅀ)'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의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음.

➡ 낳은[나은], 쌓이다[싸이다], 많아[마 : 나], 않은[아는], 싫어도[시러도], 옳은[오른]

5.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 형식 형태소와 결합되면, 연음하여 발음함. 겹받침의 경우에는, 뒤엣것을 옮겨 발음함.('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 꽃을[꼬츨], 무릎에[무르페], 들녘에[들려케], 끝을[끄틀], 밥솥에[밥쏘테] / 밭이[바치], 숱이[수치], 끝이[끄치] / 넋이[넉씨], 닭이[달기], 여덟을[여덜블], 외곬으로[외골쓰로], 값을[갑쓸]

다만, 한글 자모 중 'ㄷ, ㅈ, ㅊ, ㅋ, ㅌ, ㅍ, ㅎ'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발음함.

➡ 디귿이[디그시], 지읒을[지으슬], 키읔이[키으기], 티읕에[티으세], 피읖을[피으블], 히읗에[히으세]

6. 모음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면,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함.

➡ 밭 아래[바다래], 젖어미[저더미], 맛없다[마덥따], 겉옷[거돋], 헛웃음[허두슴], 꽃 위[꼬뒤]

☆ '맛있다[마딛따], 멋있다[머딛따]'는 [마싣따], [머싣따]로도 발음 가능.

7.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함.

➡ 군립[굴 : 립], 선릉[설릉], 연륙교[열륙꾜], 물난리[물랄리], 줄넘기[줄럼끼], 닳는[달른]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함.

➡ 결단력[결딴녁], 공권력[공꿘녁], 기판력[기판녁], 동원령[동 : 원녕], 등산로[등산노], 상견례[상견녜], 생산량[생산냥], 실천력[실천녁], 의견란[의 : 견난], 이원론[이 : 원논], 입원료[이붠뇨]

8. 관형격 기능의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함.

➡ 문-고리[문꼬리], 물-동이[물똥이], 물-살[물쌀], 굴-속[굴 : 쏙], 벌-주[벌쭈], 김-국[김꾹], 섬-돌[섬똘], 잠-자리[잠짜리], 콩-국[콩꾹], 속임-수[소김쑤]

☆ '간단, 등기, 방법, 신기다, 창고, 창구' 등에서 둘째 음절 첫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함.

한편, '불법(不法)[불법 / 불뻡] // 불법(佛法)[불법], 교과(서)[교과(서) / 교꽈(서)], 고가(高架)[고가] // 고가(古家)[고 : 가] // 고가(高價)[고까], 사법(司法)[사법] // 사법(私法)[사뻡]을 구별함.

※ 관건[관건 / 관껀], 효과[효 : 과 / 효 : 꽈], 안-간힘[안깐힘 / 안간힘], 인-기척[인끼척 / 인기척], 분수[분수 / 분쑤], 점수[점수 / 점쑤], 반값[반 : 갑 / 반 : 깝], 김-밥[김 : 밥 / 김 : 빱] 등은 모두 가능함.

9. 한자어,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함.

➡ 솜-이불[솜 : 니불], 홑-이불[혼니불], 막-일[망닐], 삯-일[상닐], 맨-입[맨닙] // 내복-약[내 : 봉냑] // 한-여름[한녀름], 학-여울[항녀울], 색-연필[생년필], 직행-열차[지캥녈차], 콩-엿[콩녇] // 눈-요기[눈뇨기], 영업-용[영엄뇽] // (대 / 맹)장-염[장념] ☆ '안-염[아 : 념], 간-염[가 : 념]' 등은 첨가하지 않음.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ㄴ'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도 가능함.

➡ 검열[검 : 녈 / 거 : 멸], 금융[금늉 / 그뮹], 강약[강약 / 강냑], 연-이율[여니율 / 연니율]

☆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ㄹ]로 발음한다. ➡ 들 - 일[들 : 릴], 솔 - 잎[솔립]

※ 다음과 같은 단어는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음. ➡ 송별 - 연[송 : 벼련], 등 - 용문[등용문]

☆ 금요일[그묘일], 함유[하뮤] / 굴욕[구룍], 밀약[미략], 일요일[이료일], 절약[저략], 활용[화룡]' 등은 'ㄴ'이나 'ㄹ'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고, 받침을 연음하여 발음함.

10. 사이시옷이 올 때는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함.

➡ 냇가[내 : 까 / 낻 : 까], 샛길[새 : 낄 / 샏 : 낄], 깃발[기빨 / 긷빨], 햇살[해쌀 / 핻쌀]

8 표준어와 맞춤법 (10제)

1.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암'도 이에 준함)

➡ 수곰, 수개미, 수거미, 수고양이, 수꿩 / 장끼, 수나사, 수놈, 수벌, 수소 / 황소, 수용 // 수키와, 수퇘지, 수캐, 수캉아지, 수컷,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탉, 수평아리 (기껏 개강 때 닭병 걸린 당돌한 돼지) [☆ 숫양, 숫염소, 숫쥐 (양염쥐)]

2. '윗 -'으로 통일

➡ 윗넓이, 윗눈썹, 윗니, 윗도리, 윗목, 윗몸, 윗배, 윗벌, 윗사람, 윗수염, 윗입술, 윗잇몸, 윗자리 //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 -'로 ➡ 위쪽, 위채, 위층, 위턱, 위팔 //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 웃 -'으로 ➡ 웃국, 웃기, 웃돈, 웃어른, 웃통, 웃풍(외풍)

[☆ 윗옷(상의) / 웃옷(겉옷)]

3. 준말과 본말을 표준어로 ➡ 노을 / 놀, 막대 / 막대기, 시누이 / 시뉘 / 시누, 오누이 / 오뉘 / 오누, 외우다 / 외다, 이기죽거리다 / 이죽거리다, 찌꺼기 / 찌끼

《머물다 / 머무르다, 서둘다 / 서두르다, 서툴다 / 서투르다, (내)딛다 / (내)디디다》 ⇒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머물어, 서둘어서, 서툴었다, (내)딛어'는 '머물러, 서둘러서, 서툴렀다, (내)디뎌'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참] 짓물다(×), 거치르다(×)

4. 복수 표준어

➡ 거슴츠레하다 / 게슴츠레하다, 고까 / 꼬까 / 때때(신, 옷), 꺼림(직/칙)하다 / 께름(직/칙)하다, 봉숭아 / 봉선화, 가뭄 / 가물, 가엾다 / 가엽다, -거리다 / -대다, 곰곰 / 곰곰이, 넝쿨 / 덩굴, 들락거리다 / 들랑거리다, -뜨리다 / -트리다, 만큼 / 만치, 여태 / 입때, 옥수수 / 강냉이, 우레 / 천둥, 좀처럼 / 좀체, 척 / 체, 추어올리다 / 추어주다 / 추켜세우다 / 추켜올리다 ('칭찬하다'), 남(우)세스럽다 / 남사스럽다, 만날 / 맨날 //~기에 /~길래, 괴발개발 / 개발새발, 눈초리(표정, 위치) / 눈꼬리(위치), 뜰 / 뜨락(+추상적 공간), 손자 / 손주(손자+손녀), 휭허케 / 휑하니, 두루뭉술하다 / 두리뭉실하다, 맨송맨송 / 맨숭맨숭 / 맹숭맹숭, 아웅다웅 / 아옹다옹, 야멸치다 / 야멸차다, 찌뿌듯하다 / 찌뿌둥하다, 치근거리다 / 추근거리다 // 예쁘다 / 이쁘다, 마을 / 마실 (가다), 차지다 / 찰지다, 푸르다 / 푸르르다, -고 싶다 / -고프다, (-지) 마라 / 말아라, 마 / 말아, 마요 / 말아요, 주책이다 / 주책없다 / 주책맞다 / 주책스럽다

5. 두음법칙

⑴ (ㄴ → ㅇ) ➡ 연년생(年年生), 연도, 회계 연도/회계연도, 연월일, 연이율, 연 10%의 이율/(한자 접두사나 합성어에서) 신-여성, 공-염불, 남존-여비, 연말-연시 [☆ 삼 년/남녀, 은닉, 생년월일, 천년왕국]

⑵ (ㄹ → ㅇ) ➡ 양심(良心), 유행/사육신, 무실역행/(모음이나 'ㄴ' 받침 뒤) 비율, 백분율, 할인율, 출산율 [☆ 쌍룡, 오륙도 /음률, 경쟁률, 합격률, 취업률, 사망률, 출생률, 명중률]

⑶ (ㄹ → ㄴ) ➡ 뇌성, 능묘/내-내월, 상-노인, 실-낙원, 부화-뇌동 [☆ 고랭지, 한랭전선, 연로, 낙뢰, 동구릉, 왕릉, 태릉/냉랭하다, 녹록하다, 늠름하다]

6. 주요 용언의 활용

⑴ 'ㄹ' 탈락 용언 ➡ 둥글다 : 둥그니, 둥근, 둥그시다, 둥그오/-지 마라/말아라, -지 마/말아

⑵ 'ㅡ' 탈락 규칙 용언 ➡ 담그다 : 담가, 담갔다/잠그다 : 잠가, 잠갔다/치르다 : 치러, 치렀다

⑶ 'ㅂ' 불규칙 용언 ➡ 가깝다 : 가까워, 가까우니, 가까웠다/아름다워, 아니꼬워[☆ 고와, 도와]

⑷ '르' 불규칙 용언 ➡ 바르다 : 발라, 발랐다/벼르다 : 별러, 별렀다/가파르다 : 가팔라, 가팔랐다

⑸ 'ㅎ' 불규칙 ➡ 하얗다 : 하야니, 하얄, 하야면, 하야오·하얗소/노랗다 : 노라네, 노란, 노라니, 노래

7. 접미사가 결합된 말

⑴ 대개 '-이, -음/-ㅁ' 접사나 '-이, -히' 접사가 결합된 말은 원형을 밝혀 적음 ➡ 길이, 절뚝발이, 절름발이 [☆ 늘그막, 뻐드렁니, 끄트머리, 이파리]

⑵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 더욱이, 생긋이, 오뚝이, 일찍이, 해죽이

8. 사이시옷 표기

⑴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

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갯값, 귓밥, 나룻배, 나뭇가지, 날갯짓, 냇가, 댓가지, 머릿기름, 모깃불, 사잇길/샛길, 선짓국, 순댓국, 쇳조각, 아랫집, 윗글, 아랫글, 잇자국, 장맛비, 킷값, 혓바늘 [☆ 해님/개구멍, 머리글, 머리글자, 소리글자 /개똥, 개펄, 뒤꽁무니, 보리쌀, 허리띠, 허리춤]

②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멧나물, 뱃놀이, 콧날, 아랫니, 텃마당, 아랫마을, 잇몸, 깻묵, 냇물, 빗물

③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두렛일, 뒷일, 뒷입맛, 베갯잇, 욧잇, 깻잎, 나뭇잎, 댓잎, 허드렛일

⑵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고양잇과, 귓병, 막냇동생, 머릿방, 북엇국, 봇둑, 사글셋방, 사잣밥, 샛강, 신붓감, 아랫방, 자릿세, 장밋빛, 전셋집, 절댓값, 진돗개, 콧병, 탯줄, 수, 횟가루, 횟배, 등굣길, 하굣길, 흥밋거리

②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곗날, 제삿날, 훗날, 봇물, 툇마루, 양칫물, 팻말, 푯말

③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가욋일, 사삿일, 예삿일, 훗일

⑶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6개)

➡ 퇫간(退間), 곳간(庫間), 횟수(回數), 숫자(數字), 셋방(貰房), 찻간(車間) : 퇴고 회수 세차(례)

[☆ 개수(個數), 기차간(汽車間), 도수(度數), 마구간(馬廐間), 소주잔(燒酒盞), 시가(時價), 이점(利點), 장미과(薔薇科), 전세방(傳貰房), 공부방(工夫房), 제상(祭床), 초점(焦點), 화병(火病)]

✓ 노랫말, 본딧말, 존댓말, 혼삿말, 혼잣말, 시쳇말/ 겸사말, 꼬리말, 머리말, 반대말, 예사말, 인사말, 나라말, 우리말, 심마니말, 겨레말//개나리길, 장미길, 버드나루길//핑크빛, 피자집,/남폿불

9. 준말 표기

⑴ 그렇지 않은/그렇잖은, 적지 않은/적잖은, 만만하지 않다/만만찮다, 변변하지 않다/변변찮다

⑵ 만만하지/만만치, 적절하지/적절치//거북하지/거북지, 넉넉하지 않다/넉넉지 않다/넉넉잖다, 생각하건대/생각건대, 섭섭하지 않다/섭섭지 않다 /섭섭잖다, 깨끗하지 않다/깨끗잖다

10. 유사어 구별

⑴ 가름(← '가르다', 나눔·구별·분별) ➡ 둘로 가름//갈음(← '갈다', 교체·교환·대신함) ➡ 새 책상으로 갈음하였다./이상으로 인사말을 갈음합니다.

⑵ 그러므로(그러니까) ➡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산다.//그럼으로(써)(그렇게 하는 것으로) ➡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으로(써) 은혜에 보답한다.

⑶ 느리다(속도) ➡ 행동이/진도가 /성미가 //늘이다(길이) ➡ 고무줄을/엿가락을/바짓단을//늘리다(양, 수, 힘) ➡ 수출량을/학생 수를/세력을/실력을/재산을.

(4) 띠다 ➡ 임무를/노기를//띄다('뜨이다'의 준말, 피동) ➡ 원고에 오자가 눈에 띈다./눈에 띄게 달라졌다./귀가 번쩍 띄는 //띄우다('뜨다'의 사동사) 편지를 /배를/누룩을.

(5) 마치다 ➡ 벌써 일을 마쳤다.//맞히다(사동) ➡ 정답을 맞히다./퀴즈의 답을 맞히다.//맞추다(사동) ➡ 안경을 맞추다./문짝을 문틀에 맞추다./친구들끼리 서로 답을 맞추어 보다./일정을 맞추다.

(6) 부딪치다(강세) ➡ 차와 차가 마주 부딪쳤다.//부딪히다(피동) ➡ 마차가 화물차에 부딪혔다.

(7) 부치다 ➡ 힘이 부치는 일이다./편지를/논밭을/빈대떡을/식목일에 부치는 글/회의에 부치는 안건/인쇄에 부치는 원고/삼촌 집에 숙식을/비밀에/투표에//붙이다(사동) ➡ 우표를 /책상을 벽에 /흥정을/불을/감시원을/조건을/취미를/별명을/내기에 1000원을/이유를/다리에 힘을/교미를.

(8) -대(놀람이나 못마땅함/간접적 전달 '-다고 해') ➡ 왜 이렇게 일이 많대?/신랑이 어쩜 이렇게 잘생겼대?/입춘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춥대?/사람이 아주 똑똑하대./철수도 오겠대?(남이 말한 내용의 간접적 전달)//-데(-더라) ➡ 그가 그런 말을 하데./경치가 과연 좋데.(경험 사실을 회상하여 말할 때)

(9) -(으)로서(자격, 신분, 위상, 위치, 가치, 시작) ➡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이 문제는 너로서 시작되었다.//-(으)로써(수단, 방법, 재료, 도구, 이유, 시간 셈에 넣는 한계) ➡ 닭으로써 꿩을 대신했다./감금죄는 ~를 제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고향을 떠난 지 올해로써 20년이 된다.

(10) -(으)므로(어미) ➡ 그가 나를 믿으므로 나도 그를 믿는다.//(-ㅁ, -음)으로(써)(조사) ➡ 그는 믿음으로(써) 산 보람을 느꼈다.

9 띄어쓰기 (10제)

1. 조사는 앞말에 붙여 씀.

➡ 꽃에서부터, 집에서처럼, 학교에서만이라도, 여기서부터입니다, 어디까지입니까, 가족들에게뿐만 아니라, 들어가기는커경, "알았다."라고, 방에설랑, 자주 만납시다그려

2. 의존 명사는 띄어 씀.

➡ 가는 ∨데가, 자제 ∨딴에는, 친구 ∨때문에, 갔을 ∨적에, 할 ∨줄 안다, 벗은 ∨채, 아는 ∨체(척), 할 ∨터이냐(테냐/테고/테니/텐데/테야), -기에/-(으)니까 ∨망정이지 (☆ -ㄹ망정 : 어미), 금 서 ∨돈, 북어 한 ∨쾌, 오징어 한 ∨축

3. 만큼, 대로, 뿐, 만 (조사 // 의존 명사)

➡ 전봇대만큼 크다, 볼 ∨만큼 보았다, 법대로 해라, 약속한 ∨대로, 온통 남자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웃고만 있을 ∨뿐이다, 시간만 보냈다 ∨뿐이지

4. 만, 지 (조사, 어미 // 의존 명사-경과한 시간, 횟수)

➡ 하나만 알고, 그것만 못하다,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 //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우리가 얼마 ∨만인가, 나는 두 번 ∨만에 그 시험에 합격하였다.

5. 데 (-ㄴ데 : 설명 감탄 -어미 // 데 : 것 곳 경우 -의존명사)

➡ 우리 고향인데 인심 좋은 곳이지, 나무가 정말 큰데. // 올 ∨데 갈 ∨데 없는 사람, 다 읽는 ∨데 삼 일이 걸렸다,/졸업장을 따는 ∨데 목적이 있다, 머리 아픈 ∨데 먹는 약

6.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 김양수(金良洙), 서화담(徐花潭), 최치원 ∨선생, 백범 ∨김구 ∨선생, 충무공 ∨이순신 ∨장군, 강 ∨선생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 남궁억/남궁 ∨억, 독고준/독고 ∨준, 황보지봉/황보 ∨지봉

7. 수(數)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 삼조 ∨이천삼백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3조 ∨2312억 ∨3456만 ∨7898, 이만 오천 ∨원/25,000 ∨원/25,000원

8.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청군 ∨대 ∨백군, 이사장 ∨및 ∨이사들, 책상, 걸상 ∨등이 있다.

9.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좀 ∨더 ∨큰 ∨것/좀더 ∨큰것, 이 ∨말 ∨저 ∨말/이말 ∨저말, 한 ∨잎 두 ∨잎/한잎 ∨두잎

10.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 다 먹어 ∨버렸다/다 먹어벼렸다, 비가 올 ∨듯하다/비가 올듯하다

10 외래어와 로마자 표기 (10제)

1.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 (7자음)만 적는다.

➡ 굿모닝(good morning), 디스켓(diskette), 마켓(market), 숍(shop), 스크랩(scrap), 집시(Gypsy)

2.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가스(gas), 피에로(pierrot), 사이즈(size), 사이렌(siren), 사이클(cycle), 사인(sign), 삿포로(Sapporo),센터(center), 서비스, 서커스(circus), 서클(circle), 선글라스(sunglass), 재즈(jazz), 잼(jam), 카페(café), 코냑(cognac), 콩트conte) [☆ 빨치산/ 파르티잔', '쓰촨성', '마오쩌둥', '쓰시마섬', '푸껫', '호찌민']

3.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 로봇(robot), 라켓(racket), 로켓(rocket), (슈퍼)마켓(supermarket), 보이콧(boycott), 셔벗(sherbet), 소켓(socket), 스폿(spot), 알파벳(alphabet), 카펫(carpet), 티켓(ticket), 파일럿(pilot) [☆ 네트(net), 메리트(merit), 배트(bat), 비트(bit), 세트(set), 쇼크(shock), 히트(hit), 히프(hip)]

4. 유음, 비음, 이중모음, 장모음 등의 뒤에 오거나 어말과 자음 앞에 오는 [p], [t], [k]는 '으'를 붙여 적는다.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b], [d], [g])eh '으'를 붙여 적는다.

➡ 미뉴에트(minuet), 샤프(sharp), 지프(jeep), 케이크(cake), 테이프(tape), 플루트(flute) // 애드리브(ad-lib), 피라미드(Pyramid), 바리케이드(barricade), 로브스터(lobster) / 랍스터

5. 어중 [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m], [n]) 앞에 올 때에는 'ㄹㄹ'로 적는다.

➡ 가톨릭(catholic), 곤돌라(gondola), 글라스(glass), 멜론(melon), 바셀린(vaseline), 스프링클러(sprinkler), 알칼리(alkali), 카탈로그(catalog), 클라이맥스(climax), 클래스(class), 클랙슨(klaxon), 클럽(club), 클로버(clover), 클리닉(clinic), 킬로(kilo), 팸플릿(pamphlet), 플라스틱(plastic), 플라자(plaza), 플래카드(placard)

6. 장모음의 장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 그리스(Greece), 그리스(grease, 기름), 덴마크(Denmark), 마가린(margarine), 마케팅(marketing) [☆ 셀룰로오스 / 셀룰로스(cellulose), 알코올(alcohol), 요오드(Jod)]

7. 중모음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되, [ou]는 '오'로, [auə]는 '아워'로 적는다.

➡ 레인보(rainbow), 도넛(doughnut), 스노(snow), 윈도(window), 쇼윈도(show window), 소파(sofa), 스트로(straw), (아이)섀도(eye shadow), 옐로(yellow), 러시아워(rush hour), 플라워(flower)

8. 따로 설 수 있는 말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

➡ 더그아웃(dugout), 아웃렛(outlet), 하이라이트(highlight), 헤드라이트(headlight)

9. 로마자 표기에서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 속리산 Songnisan, 경복궁 Gyeongbokgung, 무량수전 Muryangsujeon, 독립문 Dongnimmun

10. 로마자 표기는 전음법을 적용한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전자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 묵호 Mukho, 집현전 Jiphyeonjeon
-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음. ➡ 압구정 Apgujeong, 낙동강 Nakdonggang, 낙성대 Nakseongdae
-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음. ➡ 한복남 Han Boknam (Han Bok-nam)
- 행정 구역 단위 표기에서,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음. ➡ 삼죽면 Samjuk-myeon

국 사

정우교 교수(박문각 전임교수)

#

001

Ⅲ. 통치 구조와 정치 활동

1. 고대의 정치 1

① 삼국의 성립과 발전

	건국 ~ 3C	4C	5C
고구려	▪ 동명성왕(기원전 37) - 부여 유이민(주몽) - 압록강 토착 세력 ▪ **태조왕**(53~146) - 왕위 세습 (형제 상속, 고씨) - **동옥저 복속** ▪ 고국천왕(179~197) - **행정적 5부** - **부자 상속** - **진대법 실시** (을파소, 194)	▪ 미천왕(300~331) - 서안평 점령(311) - **낙랑 축출**(313), 대방 축출(314) → 한반도 진출의 발판 마련 ▪ 고국원왕(331~371) - 전연(모용황)의 침입(342) - **근초고왕(백제)의 침입** → 평양성 함락, 전사 ▪ **소수림왕**(371~384) - 불교 수용(372, 전진) - **태학** 설립(372), 율령 반포(373)	▪ **광개토대왕**(391~413) – **북진** 정책 - 신라에 침입한 왜 격퇴(400) → **전기 가야 연맹 해체** - 거란, 후연 격파 → 요동과 만주 대부분을 차지 - **영락**(최초의 연호) ▪ **장수왕**(413~491) – **남진** 정책 - 중국 남·북조와 수교 - **평양 천도**(427) → 한성 함락 - 한강 이남 점령 → 중원 고구려비, 호우명 그릇 - **흥안령 일대 지두우 분할 점령**
백제	▪ 온조(기원전 18) - 고구려 유이민 - 한강 토착 세력 ▪ **고이왕**(234~286) - 관등제 정비 (6좌평, 16관등) - 관복제 도입(260) - 목지국 병합 → **한강 유역 장악**	▪ **근초고왕**(346~375) - 마한의 잔여 세력 정복(369) - 가야에 대한 지배권 행사 - 평양성 공격, 고국원왕 전사 - 해외 진출 → 요서, 산둥 / 규슈 - 왜왕에게 **칠지도** 하사(368) - 서기(고흥) - **부자 상속** ▪ **침류왕**(384~385) - 불교 공인(384, 동진)	▪ 비유왕 – 나제동맹 성립(433) ▪ **개로왕**(455~475) - 장수왕의 공격, **북위에 국서** - 한성 함락, 전사(475) ▪ 문주왕(475~477) - 웅진(공주) 천도(475) ▪ 동성왕(479~501) - **나제동맹 강화**(소지, 493)
신라	▪ 박혁거세(기원전 57) - 사로국(6 촌) (경주 토착 세력) - 유이민 세력 미약	▪ 거서간 → 차차웅 → 이사금 - 박·석·김이 교대로 왕위 차지 ▪ **내물마립간**(356~402) - 왜의 침입(400) → 광개토대왕의 지원, 격퇴 → 고구려 군대의 주둔 → 고구려의 내정 간섭 → 호우명 그릇 - 김씨 왕위 계승권 확립 - 마립간	▪ 눌지마립간(417~458) - 나제동맹 성립(비유왕. 433) - **부자 상속** - 불교 전래(묵호자) ▪ 소지마립간(479~500) - **나제동맹 강화(결혼동맹)** - 백제, 동성왕(493)

Ⅲ. 통치 구조와 정치 활동

1. 고대의 정치 1

① 삼국의 성립과 발전

6C	7C
 [가야] B(금관가야) → A(대가야) ▪ **금관**가야 – 전기 가야 연맹 주도, 멸망(법흥왕) ▪ **대**가야 – 후기 가야 연맹 주도, 멸망(진흥왕)	▪ 영양왕(590~618) – 죽령 이북 회복, 신라 압박(온달, 590) / 신집 5권 – 말갈 세력과 손잡고 요서를 선제 공격(598) → 수와 전쟁(**살수** 대첩 · **을지문덕**, 612) ▪ 영류왕(618~642) – **천리장성 축조**(631~647) ▪ 보장왕(642~668) → 연개소문 집권 – **당**과 전쟁(**안시성** 전투 · 양만춘, 645) – 멸망(668) → 안동도호부 설치(668) ▪ 부흥 운동 ← 신라의 지원 – 안승(보덕국왕 → 진골) / 검모잠 · 고연무
▪ 무령왕(501~523) – 지방의 **22 담로** → 왕족 파견 – 중국, 남조(양)과 교류 시작(백제영동대장군) ▪ **성 왕**(523~554) – 제 2 의 전성기 → X – **사비**(부여, 538) 천도, **남부여**(국호) – 중앙 · 지방 제도 정비 / 불교 진흥(겸익) → 일본에 불교 전파(노리사치계, 552) – 중국, 남조(양)과 교류 강화 – 신라와 연합, 한강 유역 일시 회복 → 진흥왕의 배신 → 전사(**관산성 전투**, 554)	▪ 무왕(600~641) – 궁남지, 왕흥사 · 미륵사 창건, 익산 천도 시도 ▪ 의자왕(641~660) – 해동증자 / **대야성 등 신라 40여 성 함락**(642) – 멸망(660) → 웅진도독부 설치(660) → 소부리주(671) ▪ 부흥 운동(660~663) ← 왜의 지원(백강전투) – 주류성 → 왕자 풍(661) / 복신 · 도침 – 임존성 → 흑치상지
▪ **지증왕**(500~514) – **한화** 정책 – 신라(국호), 왕호 사용 – 수도 · 지방 행정 구역 정리 – 우산국 복속(이사부) / 순장 금지, 우경 실시 ▪ **법흥왕**(514~540) – 건원(536) – 병부 설치, 율령 반포, 공복 제정 / 상대등 설치 – 불교 공인(이차돈 순교, 527) / **금관가야 정복** ▪ **진흥왕**(540~576) – 화랑도 개편, **국사**(거칠부), 황룡사 창건 – 한강 유역 진출, 신주 설치 → 관산성 전투 → 수, 당과 직접 교류(당항성) – **대가야 정복**(562) / 단양 적성비, 순수비(4개)	▪ 진평왕(579~632) – 세속 5계, 걸사표(수, **원광**) ▪ **선덕여왕**(632~647) → 최초 여왕 / 지기삼사 – 첨성대 / 분황사, 영묘사 / 황룡사 9층 목탑 ▪ 진덕여왕(647~654) – 태평송(당) / 태화, 아홀 ▪ 무열왕(654~661)– 최초의 진골, 백제 멸망 ▪ 문무왕(661~681) → 삼국 통일(676) – 계림도독부 설치(663) / 취리산 회맹(665) – 나당 전쟁(소부리주 설치 / 매소성 · 기벌포 전투) ▪ 통일의 한계 – 외세 이용, 대동강~원산만 이남

#

002

Ⅲ. 통치 구조와 정치 활동

1. 고대의 정치 2

② 남북국의 정치

– 통일 신라의 발전

중 대	하 대
▪ **신문왕** (31 : 681 ~ 692) – 전제 왕권의 확립 – 김흠돌의 난 진압(681) → 진골 세력 숙청 – 집권 체제의 강화 → 관료전 지급, 녹읍 폐지 / 국학 설립(682) – 6 두품 세력의 성장(집사부 시랑) – 감은사, 만파식적(682) / 달구벌 천도 시도 ▪ 성덕왕 (33 : 702 ~ 737) – 무왕 – **정전** 지급, 공자와 제자의 화상 국학에 안치 ▪ 경덕왕 (35 : 742 ~ 765) – 문왕 – 국학 → 태학감(747) / **녹읍 부활**(757) – 불국사, 석굴암, 성덕대왕 신종 주조 시작	▪ 원성왕 (38 : 785 ~ 798) – 독서삼품과 설치 ▪ 헌덕왕 (41 : 809 ~ 826) – 김헌창, 김범문의 난 ▪ 흥덕왕 (42 : 826 ~ 836) – 청해진 설치(장보고) ▪ **진성(여)왕** (51 : 887 ~ 897) – 원종·애노의 난(889), 적고적의 난(896) – 견훤, 궁예의 성장, 최치원의 시무 10조 제시 – 향가집 <**삼대목**> 편찬(위홍, 888) ▪ 새로운 지방 세력의 성장 – 호족과 6 두품 ▪ 진성여왕 이후 – 후삼국 시대

– 발해

무 왕 (2 : 719 ~ 737, 대무예)	**문 왕** (3 : 737 ~ 793, 대흠무)	선 왕 (10 : 818 ~ 830, 대인수)
시 작	발 전	전성기
▪ 8C 초 → **북만주 일대 장악** ▪ 당 – 흑수 말갈을 이용, 발해 견제 – 흑수 말갈 공격(대문예 X) – 산둥(장문휴, 수군), 요서 공격 ▪ 신라 – 북방 강화(성덕왕) ▪ 돌궐, 일본과 외교 관계 → 당, 신라 견제 ▪ **일본에 보낸 국서**(722) → 고구려 계승 표방	▪ **천도**(동모산) → 중경 → 상경 → 동경 (5대 성왕, 상경 천도) ▪ **당과 친선** – 3성 6부제 실시 – 중국도 / 빈공과 합격 – 발해국왕, – **대흥보력금륜성법대왕** ▪ 신라 – 신라도 개설(경덕왕) ▪ **일본에 보낸 국서** → 고려 국왕, **천손** ▪ **황상**(皇上), 황제국 표방	▪ 대야발(대조영의 동생) 직계 ▪ **말갈** 대부분을 **복속**, **요동 진출** ▪ **지방제도 정비(5경 15부 62주)** ▪ 해동성국
인안	**대흥**	**건흥**

#

003

2. 고려의 정치

① 고려 초기

태 조	**광 종**	성종
▪ 흑창 ▪ 중앙 관리·사성·결혼 정책 ▪ 사심관, 기인 제도 ▪ 정계·계백료서 / **훈요 10조** ▪ 북진 정책 - 청천강~영흥만	▪ **노비안검법**(956) ▪ **과거제도** 실시(958) - 쌍기 ▪ 백관의 **공복** 제정(960) ▪ 공신과 호족 숙청 ▪ **광덕·준풍 / 황도, 서도**	▪ 최승로 - 5조 정적평·**시무 28조** ▪ 2성 6부 / 도병마사, 식목도감 ▪ 지방관 파견(12목) 시작 → 향리 제도 개편(호장, 부호장) ▪ 국자감 정비 ▪ 거란 침입 - 서희, 강동 6주
▪ 역분전(940) ▪ 연등회, 팔관회 **개최**	▪ 주현공부법 ▪ **귀법사(균여)**	▪ 건원중보(996) - 최초 ▪ 연등회, 팔관회 **폐지**

② 원 간섭기의 개혁 정치

충렬왕	충선왕	**공민왕**
▪ 관제 격하 / 내정 간섭 ▪ 영토 상실, 일본 원정 ▪ 도병마사 → **도평의사사**	▪ **사림원**(1298) - 인사, 왕명출납 ▪ **소금·철 전매제**(각염법, 1298) → 국가 재정 확충 시도 ▪ 재상지종(복위교서) ▪ **만권당**(1314) - 원 학자와 교류	▪ 1차 - 친원 세력 숙청(기철), 관제 복구 정동행성(이문소) 혁파 , / **쌍성총관부 수복** → 요동 공략 ▪ 홍건적(1359, 1361)의 침입 ▪ 2차 - **신돈** 등용, **전민변정도감 정비**, 성균관·과거제 정비 → 신진 사대부 등장

3. 조선의 정치

① 조선 초기

태 조	태 종	**세 종**	세 조	성 종
▪ 정도전 - 조선경국전 - 재상 중심 정치 ▪ 불씨잡변	▪ 왕자의 난 ▪ 국왕 중심 통치 - 6조 직계제 실시 - 사간원 독립 - 사병 폐지 ▪ 호패법 실시 ▪ 노비 변정 사업 ▪ 향·부곡 → 소멸	▪ **의정부 서사세** ▪ 집현전 설치 ▪ 4군, 6진 개척 ▪ 쓰시마(이종무) ▪ 전분 6등, 연분 9등 ▪ 칠정산 편찬 ▪ 훈민정음 창제	▪ 계유정란 ▪ 6조 직계제 부활 ▪ 집현전 폐지 경연 중단 ▪ 경국대전 편찬 시작(호·형전) ▪ 보법 / 직전법 ▪ 원각사지 10층탑	▪ 경국대전 반포 ▪ 홍문관 설치 - 집현전 계승, 경연 주관 ▪ 사림파 등용 ▪ 관수관급제 ▪ 동국통감

② 조선 후기 - 영조 Vs 정조

영 조	**정 조**
▪ 탕평파 육성(탕평비), 군영 정비 ▪ 산림 존재 X, 서원 정리, 이조전랑 권한 축소 ▪ 속대전 편찬, 균역법 시행 ▪ 사형수 삼심제, 신문고 부활, 청계천 준설 ▪ 이인좌의 난(청주, 1728) / 나주 괘서 사건(1755) ▪ 임오화변(176) → 시파·벽파 ▪ 완론 탕평	▪ 시파 - 소론·남인 + 일부 노론 중용 ▪ 초계문신 제도 → 규장각, 지방 수령 권한↑ → 고금도서집성 수입, 문체반정 시도 ▪ 장용영 설치, 무예도보통지, 대전통편, 화성 ▪ 신해통공 - 금난전권 폐지(육의전 제외) ▪ 서얼·노비 차별 완화 ▪ 준론 탕평 / 상언, 격쟁

#

004

Ⅴ. 경제 구조와 경제 생활

1. 경제 제도

① 수취 체제(세금)

조 선		
초 기 (15^C)	중 기 (16^C)	후 기 (17^C – 19^C)
▪ 수확량의 1 / 10 (1 결당 30두) → 경창(조운) – 잉류지역 – 평안도·함경도 ▪ 공법 (세종) – 연분 9 등법 → 풍흉, 지역 단위, 20 ~ 4 두 – 전분 6 등법 → 비옥도, 1결의 면적이 다름		▪ 영정법(인조) – 전세의 정액화 – 풍흉에 관계없이 1 결당 4 두 – 국가 수입 감소 ⇔ 각종 부가세
▪ 호세, 토산물 ▪ 종류 – 상공·별공·진상 ▪ 중앙 관청 → 군현 할당 → 가호 할당 ▪ 폐단 – 생산량 감소, 생산지 변화 – 다른 곳에서 구입, 납부	▪ 대납 → 대납가 ↑ ▪ 방납의 폐단 → 유망 농민 증가 ▪ 개선 시도 – 수미법	▪ 대동법(선혜청) – 공납의 전세화(1결당 12 두) – 농민 부담 감소, 지주 부담 증가 – 경기도(광해군) → 전국 확대(숙종) – 공인 등장, 상품 화폐 경제 발달 – 현물 징수 존속 → 별공, 진상
▪ 군역 – 정군, 보인, 면제 ▪ 요역 – 정남의 수, 토지 8 결당 1 인 → 실제는 임의로 징발	▪ 요역 기피 → 군역의 요역화 ▪ 대립제 → 대립가 ↑ ▪ 방군수포·군적수포제 실시	▪ 균역법(균역청) – 영조, 1년 1필 – 이중 삼중의 군포 징수 → 부과량 증가 – 결작 / 선무군관포 / 어장·선박·염세

② 수취 체제(세금)

삼 국	남북국		고 려	조선
상 대	중 대	하 대		
▪ 녹읍 ▪ 식읍	▪ 관료전 지급 ▪ 녹읍 폐지 ▪ 정전 지급	▪ 녹읍 부활	▪ 역분전 ▪ 시정 / 개정 / 경정 전시과 ▪ 전시과 붕괴 → 녹과전 지급	▪ 과전법(고려 공양왕) ▪ 직전법(세조) / 관수관급제(성종) ▪ 직전법 폐지(명종)

2. 경제 활동 – 조선 후기

농업	수공업	광업	상업	화폐	대외무역
▪ 모내기법 확대(이모작) → 광작 → 부농 증가 ▪ 견종법 ▪ 상품 작물 ▪ 쌀의 상품화 ▪ 농가집성 ▪ 실학적 농서	▪ 민영 수공업 발달 – 납포장 증가 – 선대제 – 독립 자영	▪ 사채 (설점수세) ▪ 잠채 ▪ 상인 물주 ▪ 덕대	▪ 상품 화폐 경제 발달 – 공인 / 도고 – 금난전권 폐지 (정조) – 송상 – 경강상인 ▪ 장시 → 5 일장 ▪ 포구(객주, 여각)	▪ 전국 유통 → 상평통보 ▪ 전황 ▪ 환·어음	▪ 활발 – 개시 / 후시

#

005

VI. 민족 문화의 발달

1. 사상사

① 불교

삼 국	남북국	고 려	
상 대	중 대 ~ 하 대	중 기	무신 집권기
▪ 수용 ▪ 역할 ▪ 특징	▪ 원효 – 불교의 대중화 ▪ 의상 ▪ 교종 Vs 선종	▪ 의천 – 교선통합, 천태종	▪ 신앙 결사 운동 – 요세, 지눌 ▪ 지눌 – 선교통합, 조계종 ▪ 혜심 – 유불일치설

② 역사서

– 고려

고 려				
초 기	중 기	무신집권기	원간섭기	말기
▪ 왕조실록 ▪ 7대 실록 ▪ 구삼국사	▪ 삼국사기 (1145, 김부식)	▪ 동명왕편 (1192, 이규보) ▪ 해동고승전 (1215, 각훈)	▪ 삼국유사 (1281, 일연) ▪ 제왕운기 (1287, 이승휴)	▪ 사략(이제현)
고구려 계승 의식	신라 계승 의식	고구려 계승 의식	고조선 계승 의식	

– 조선 초기

동국통감	서거정	▪ 세조 ~ 성종, 고조선에서 고려 말 / 외기, 삼국기, 신라기, 고려기

– 조선 후기

이 익		▪ 중국 중심의 역사관 비판	
안정복	동사강목	▪ 정통론 체계화(삼한 정통론), 고증 사학 토대 마련	
이긍익	연려실기술	▪ 조선 시대 정치와 문화 정리, 기사본말체	
한치윤	해동역사	▪ 외국 자료 이용 → 민족사 인식의 폭 확대	
이종휘	동사	고구려사	▪ 고대사 연구 시야를 만주로 확대 → 한반도 중심 사관 극복
유득공	발해고	발해사	

2. 과학기술사

	고 려		조 선	
	전 기	후 기	초 기	후 기
천문학	사천대	서운관	▪ 천상열차분야지도	▪ 김석문, 홍대용 – 지전설, 무한우주론
	선명력(당)	수시력(원, 충선왕)	▪ **칠정산**(세종, **서울**)	▪ 시헌력(김육)
인쇄술		상정고금예문 직지심체요절(현존)	▪ 태종 – 주자소, 계미자 ▪ 세종 – 조지서, 갑인자, 식자판 조립 방안	
의 학		향약구급방 (현존)	향약집성방 의방유취(백과사전)	동의보감(허준) 동의수세보원(이제마)
무 기		최무선 (화통도감)	신기전, 거북선	

3. 기타 – 조선

초 기	중 기	후 기
▪ 삼강행실도(세종) ▪ 국조오례의(성종)	▪ 사림 – 소학·주자가례 보급 ▪ 정부 – 이륜행실도·동몽수지	백과사전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 팔도도 (태종)	조선방역지도 – 현존	▪ 곤여만국전도 ▪ 동국지도(정상기) – 100리척 ▪ 대동여지도 (김정호) – 10리
동국여지승람 (성종)	신증동국여지승람 (중종) – 현존	택리지 (이중환)

4. 예술사

고 려		조 선		
전 기	후 기	초 기	중 기	후 기
궁궐과 사원 중심	▪ 주심포 양식 ▪ 다포 양식	공공건물 무위사 극락전	서원 건축	법주사 팔상전 화성 / 경복궁 중건
월정사 **8각 9층 석탑(송)**	경천사 10층 석탑(원)	원각사 10층 석탑		
▪ 대형 철불, 석불 ▪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여래 좌상				
고려청자	상감청자	분청사기	(순)백자	청화 백자
구양순체	송설체	한호(석봉체)		이광사 (동국진체) 김정희 (추사체)
전문 화원 문인화	천산대렵도 관음보살도	▪ 몽유도원도 ▪ 고사관수도	**다양한 화풍** (산수화·사군자)	▪ 진경산수화 ▪ 풍속화 ▪ 민화의 유행
▪ 아악 – 대성악(송), 궁중 음악 ▪ 속악(향악) – 동동, 한림별곡, 대동강				▪ 탈놀이 ▪ 산대놀이 성행 ▪ 판소리 ▪ 한글 소설 ▪ 사설시조

#

006

Ⅶ. 근대 사회의 전개

2. 러일 대립기 - 개혁

갑오 개혁 – 1차	갑오 개혁 – 2차	을미 개혁
• 대원군 섭정, 군국기무처 주도 • 갑신정변, 동학농민 요구 반영	• 대원군 퇴진, 군국기무처 폐지 • 박영효 주도 → 홍범 14조	• 삼국간섭 - 러·프·독 • 박영효 실각, 을미사변
• 왕실과 정부 사무 분리 • 개국 연호 사용 • 과거 제도 폐지 • 재정의 일원화 - 탁지아문 • 은본위 화폐제(은화, 백동화) • 조세의 금납화 • 신분 제도 폐지 • 고문·연좌법 폐지 • 조혼 금지 / 과부의 재가 허용	• 청과의 관계 청산 • 내각 권한 강화(8아문 → 7부) • 지방관 권한 축소(8도 → 23부) - 행정권 / 사법권, 군사권 X • 재판소 설치 → 사법권 분리 • 교육입국조서 반포 → 한성 사범학교 설립 → 외국어학교 관제 공포	• 연호 - 건양 • 친위대, 진위대 설치 • 태양력 사용 • 단발령 시행 • 종두법 시행 • 소학교 설치 • 우편 사무 시작 • 을미의병 • 아관파천 → 개혁 중단

독립협회	광무 개혁
• 아관파천 이후, 이권 침탈 심화 • 민중 계몽 - 서재필 → 독립신문(1896. 4) → 독립협회(1896. 7)	• 대한제국(1897) / 광무개혁(1899) • 갑오·을미개혁의 급진성 비판 → 점진적 개혁 • 구본 신참 • 개혁 기구 - 교정소
• 1기 - 민중 계몽 → 정부 관료 주도, 민중 참여 → 계몽 시작	• 전제 황권 강화 - 대한국 국제 • 원수부 설치(황제의 군권 강화), 시위대·진위대 • 간도 편입 정책 → 간도 관리사 파견(이범윤) • 양전 사업, 지계 발급 → 근대적 토지소유권 확립 시도 • 상공업 진흥 - 근대적 회사 설립 • 근대적 시설 확충 • 교육 장려 - 중학교, 상공학교
• 2기 - 자주 국권 → 민중 주도, 만민공동회 ⇔ 러, 이권 침탈(절영도 조차 등) • 3기 - 자유 민권, 자강 개혁 → 박정양 내각 수립, 관민공동회 개최 → 헌의 6조, 중추원 설립 시도	

3. 국권피탈기 - 국권 회복 운동(의병)

을미 의병	을사 의병	정미 의병
명성황후 시해, 단발령 시행	을사 보호 조약, 외교권 박탈	고종 강제 퇴위, 군대 해산
• 주도 - 보수 유생 참여 - 민중(농민) → 동학 농민군 잔여 세력이 대거 가담 • 해산, 아관파천 이후 → 단발령 철회 → 고종, 해산 권고 조칙 → 농민 일부, 활빈당에 가담	• 최익현 → 보수 유생, 대마도 • 신돌석 → 평민 의병장 등장	• 해산 군인 → 의병 합류 • 의병 연합, 13도 창의군 → 이인영, 허위 → 국제법상 교전 단체로 인정 요구 → 서울 진공 작전 시도 • 일, 남한 대토벌(1909) → 위축 → 국외, 독립군 활동

#

007

Ⅷ. 민족 독립 운동의 전개

1. 일제의 식민 통치

한일병합 1910	3·1 운동 1919	중일전쟁 1937	광복 1945

1기 1910'S 무단통치	2기 1920'S 문화통치	3 – 2기 1930 ~ 40'S 민족말살통치
• 총독 – 육·해군 대장 • 중추원 – 총독자문기관 • 헌병 경찰 – 즉결, 태형 • 관리, 교원 – 칼, 제복 • 자유 박탈 • 일진회 해산	• 총독 – 문관 가능 • 지방 자치 – 평·협의회 • 제도 개정 – 보통 경찰 • 무관 복제 폐지 • 자유의 제한적 허용 – 신문 발행(조선·동아) ↔ 치안 유지법 • 교육 기회 확대 • 친일세력 양성, 자치운동 시작	• 황국 신민화 정책 → 동화 – 신사참배, 궁성요배 – 황국신민서사 암송 – 내선일체, 조선어 과목 폐지 – 일본식 성명 강요 – 조선·동아 폐간 – 애국반
• 토지조사사업 • 회사령 – 허가제 • 산림·어업·광업령 • 철도, 항만, 도로 • 담배, 인삼 – 총 전매	• 산미증식계획 • 회사령 폐지 – 신고제 → 일본, 산업이민, 경 • 관세 철폐, 신은행령 ↔ 물산장려운동	• 총동원 체제 (인) 지원병, 징용 / 징병, 학도병, 정신대 (물) 미곡 공출·배급, 금속제 공출·배급

2. 1920년대 민족 독립 운동

6 · 10 만세 운동	신간회	광주 학생 항일 운동
• 일제의 수탈 정책 • 식민지 차별 교육 • 순종의 죽음	• 민족 독립운동의 혼란 • 임시 정부의 위기 • 중국의 1차 국공 합작	• 식민지 차별 교육
• 학생 + 사회주의 + 민족주의	• 비타협 민족 + 사회주의	• 학생
• **조선학생과학연구회** • 학생들의 격문 살포 → 만세 시위	• 조선 민흥회 + 정우회 선언 • 전국 지회, 농민·학생 운동 지원 • 광주 학생 항일 운동 → 진상조사단 파견 → 민중 대회 개최 시도	• 광주 학생 사건 → 한·일 학생 충돌 → 일본 경찰의 편파 처리 → 전국 확대 • 신간회, 진상조사단 파견
• 학생이 민족 운동 주도 • 민족 + 사회주의 연대 계기	• 해소 → 일제 탄압, 이념 대립 → 코민테른의 지시	• 3·1 운동 이후 → 최대 민족 운동

[참고] 국외 – 무장 독립운동의 전개 → 시기 구별

1기 1910'S	2기 1920'S	3-1기 1930'S 전반	3-2기 1930'S 후반 이후
준 비	본 격	한중연합작전	통합 → 분화
독립군 기지 건설 → 독립군 양성	전 – 참 – 재 – 타 – 통 X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민족혁명당·조선의용대 임시 정부·한국광복군

#

008

Ⅸ. 현대 사회의 발전

1.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 대상 구별, 시기 구별

1	**모스크바 3상 회의**	• 1945. 8. 15 / 미·영·소 • 임시 정부 수립,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최장 5년의 신탁 통치 • **반응** – 우익, 즉각적인 독립 → 반탁, 반소·반공 운동 좌익, 임시 정부 수립 → 반탁에서 지지로 선회 • **결과** – 여론은 반탁, 좌우 대립 심화
	1차 미소 공동위원회	• 1946. 4 / 참여할 단체의 범위 → 대립, 무기한 휴회 • 미국 모든 단체, 소련 모스크바 3상 회의를 받아들이는 단체만
	정읍발언	• 1946. 6, 이승만 – 단독 정부 수립 주장 → 한국민주당 지지
	좌우합작 운동	• 1946. 7 / **여운형·김규식** → 중도파 주도 • **미군정 지원** → 좌우합작 7원칙 발표 • [찬성] 김구, 이승만, 여론 / [반대] 한국민주당, 조선공산당 • 과도 입법위원 구성 → 한국민주당 주도 → 여운형 탈퇴 → 미군정 지지 철회 → **2차** 미소공위 결렬 → 여운형 암살 • 한계 – 실세들의 불참, 미군정의 지원 철회
2	UN 상정	•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 → 소련, 거부 → 가능한 지역 총선거 (UN 총회,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소총회)
	남북협상	• 1948. 4 / **김구·김규식** • 남북협상 제의 → 남북 지도자 회의(**남북연석회의**, 평양) → 실패 → 5·10 총선거 불참 선언 → 김구 암살(1949. 9)

2. 개헌

제헌	1948	•대통령 간선제(국회)	4년 중임
1차	1952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국회)	발췌개헌, 6·25 전쟁 중
2차	1954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 철폐	사사오입 개헌
3차	1960	•의원내각제, 양원제(국회)	4·19 직후
4차	1960	•3·15 부정 선거 관리자, 부정 축재자 등 처벌	
5차	1962	•대통령 직선제, 단원제(국회)	
6차	1969	•대통령 3선 허용	3선 개헌
7차	1972	•대통령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	유신체제, 임기 6년
8차	1980	•대통령 간선제(대통령선거인단), 단임제(7년)	5공화국 헌법
9차	1987	•대통령 직선제, 단임제(5년)	현행 헌법

3. 통일 정책

박정희 정부	[1]	•남북 적십자 회담(1971. 9) •7·4 남북 공동 성명(1972) → 통일의 3원칙 합의(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 남북 조절 위원회 구성, 직통 전화 가설, → 독재 체제 구축에 이용(유신 + 주석제)
노태우 정부	[2]	•북방 외교 → 유엔 동시 가입 → 남북기본합의서 → 한반도비핵화선언 •남북 기본 합의서(1991,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 상호 불가침, 교류와 협력 실시 시작
김대중 정부	[3]	•금강산 관광 시작(해로) •남북 정상 회담,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확대), 이산가족 상호 방문, 경의선 복구
노무현 정부	[4]	•금강산 관광 확대(육로 관광 시작), 개성 공단 조성 •10·4 선언(2007,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 백두산 관광, 서해 평화 지대 창설

영 어

이아람 교수(박문각 전임교수)

[속독 독해공식 30]

1. "역접 뒤가 핵심" 규칙은 갓진리
주제가 맨 앞 / 주제가 역접 뒤 / 주제가 마지막 / 주제가 샌드위치 구성 중 하나인데, 두 번째 유형이 가장 잘 나온다.

2. 주제가 잘 파악되지 않으면, 맨 마지막 문장을 보자!
일화나 사건으로 시작한다면 더욱 그렇다. 미괄식 구성이다.

3. 주제는 통념을 거스르는 것이다.
당연한 것, 뻔한 것에 낚이지 않는다. 지문은 새로운 정보와 참신한 내용을 알려주려는 목적이 있다.

4. 전문용어 등장 시 대처법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거 뭔지 설명하고 나서 주제 나올 거야."라고 편하게 생각하라.

5. 속독 시 삽입절과 나열된 것은 무시해도 좋다.
컴마 컴마(, ,)나 대쉬(—)는 무시한다. A, B, and C 구조에서는 A 만으로 읽어나가도 논리 전개에 무리 없다.

6. 글이 길어진 경우 예시가 2개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첫 번째 예시까지만 읽고도 답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7. "가정해보자 / 생각해 보자"라는 표현의 위치
필자는 자신의 main idea를 제시한 뒤 1) 그에 딱 부합하는 사례를 제시하거나 2) "다음의 상황을 가정해보자/상상해보자"라고 제시한다. 따라서 suppose, assume 등의 표현들은 논리 전개상 전반부에 나와야 한다.

8. even - 심화의 논리
"유사한 것이 앞에 나와 있을 것이고, 그것들보다 이 아이는 더 심한 거야. 뒤에 배치되겠네."라고 추론한다.

9. if 와 when은 상술의 시작점
주제를 파악만 하면 되는 문제라면, 이 부분 뒤는 읽지 않아도 답을 추론할 수 있다.
문장 삽입 문제에 이 문장이 제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의 G(General)를 찾아서 그 다음에 배치한다.

10. 필자의 강력한 언어 단서 12가지
- 최상급 문장: 필자가 힘줘서 말하는 부분, 제발 읽어줘!
- interestingly, surprisingly, unfortunately로 시작하는 문장
- Except for / Besides / other than / aside from A, B의 구조: B가 초점이므로 그 부분이 중심 논의 사항이다.
- paradoxical, ironic, contradictory, puzzling, perplexing: "역설적이다"라는 뜻의 단어 뒤에는 [A임에도 불구하고 B이다]라는 대조의 상황이 반드시 구체적(specific)으로 연출된다.
- finally, eventually, at last, end up Ving: 논리의 귀결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 속담이나 격언: 이게 주제이거나, 혹은 이걸 틀렸다고 꼬집으려고 가져온 것이다.
- ignore, neglect, underestimate, resist, reject, suspicion, criticism, doubt, skepticism, question: 해당 단어가 나오면 그 원인과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정답의 포인트이다.
- 부분부정 (not always / necessarily / automatically): 부연설명을 살짝 읽어라.
- nothing but a / no more than / just / mere / only 등의 한정 표현
- 역접의 표현 다시 정리: however, but, yet, on the other hand, in contrast, conversely, on the contrary, nevertheless, notwithstanding, even so, still.
- 구조적 단서: 준동사를 부정하는 구문 / 도치구문 / 가목적어-진목적어 구문은 독해력을 측정하려고 답을 이 부분에 숨겨놓는 경우가 많다.

- 조동사 및 명령문: 의무 조동사 (should, ought to, have to, must, need to) 및 명령문

11. 자주 등장하는 시나리오 5가지

인류의 역사: 문제를 인식하고 ➔ 그것을 해결하려는 탐구의 노력을 통해 ➔ 해결하고 극복함 ➔ 그 산물이 영향을 주어 문명이 발전하게 됨 (P - S logic)

난제/꿈/목표 ➔ 해결/실현/달성 해결책 던지기 ➔ 해결책의 원리 및 배경 설명 ➔ 해결책 적용 사례

새로운 개념/원리/규칙/이론 소개 ➔ 이것의 내용 상술 ➔ 그것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

학자의 가설과 이론을 다루는 경우: 학설의 원리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한 뒤 ➔ 이 학설이 실제로 유효한지 실험이나 연구를 통해 설명 ➔ 이 학설이 옳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나아갈 방향(연구실을 넘어선 real world에서의 적용법)을 제시함.

실험실에서는 성공했는데 ➔ 현실에서는 한계 발생 ➔ 왜 이렇지? 원인 분석 (➔ 부족한 점 만회 ➔ 성공)

12. 실험·연구는 결과와 자료의 유의미한 해석이 중요하다

사람이름 + 주장한다/말한다/주목한다/알아냈다 부분은 속독에서 중요하지 않다. 이후 나오는 that + 내용(생략되기도 함)을 중점적으로 이해한다.

[연구 + 연구의 출처와 조건]은 건너뛰고 ➔ 연구 결과 및 해석을 나타내는 단어 뒤를 집중 공략한다. (found, illustrate, show, suggest, emphasize, conclude, determine)

13.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의 흐름

나쁜 거, 바람직하지 않은 것, 부정적인 것이 나왔다면 ➔ “이건 나쁜 거잖아, 이걸 어떻게 좋게 만들지? 이런 나쁜 현상은 왜 생기지?”에 관한 이야기가 뒤따라 나온다.

14. 밑줄 친 의미 추론(함축 의미) 문제

비유적, 관용적 표현이나 속담 등이 잘 나온다. 결국 주제를 강조하려고 이런 수사학적 장치를 쓴 것이므로 글의 전체 주제를 찾으면 풀린다.

15. 순서 배열 문제에서의 'however' 위치

순서 문제에서 however는 맨 마지막 단락에 배치되기엔 조금 위험하므로, 상대적으로 중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16. 유명인 / 성공한 사람 / 갑부가 등장하는 이유

“이 사람 왜 이렇게 잘나가지?”에 대한 성공의 비결을 찾아서 나도 성공해야겠다는 교훈적 결론으로 이어진다.

17. 역접으로 시작된 문장의 성격

역접으로 시작된 문장은 99% 일반적 진술(General)이다. 따라서 바로 다음 문장에 이에 대한 구체적 진술(Specific)이 나오겠다고 예측한다.

18. 수량 형용사 뒤의 흐름

many, several, diverse 같은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그 세부 사항이 무엇인지 뒤에 따라나온다. 이 부분을 읽으면 이해가 쉽다.

19. 문장 삽입 문제의 치트키: ‘단수 명사’를 ‘복수 대명사’로 받을 수 없다

원리: 지문의 단절을 찾을 때 해석에만 의존하면 낚인다. 제시문에 They나 These + 명사가 있다면, 지문 속 바로 앞 문장에는 반드시 그에 대응하는 ‘복수 명사’가 존재해야 한다.

스킬: 앞 문장에는 단수 명사(a store)만 있는데, 다음 문장에서 지칭 단서 없이 These stores나 They로 시작한다면 논리적 단절이다. 그 공간이 바로 제시문이 들어갈 정답 자리이다.

20. 흐름 무관 문제 대처법

주어를 잘 보라. 주체(주어)가 교묘하게 달라져서 글의 전체 주제가 다른 방향으로 튀는 문장이 정답이다.

21. 비판적 어휘로 시작하는 글

mistakenly, erroneously, wrong과 같은 단어로 시작했다면 해당 주체가 잘못했다는 뜻이다. 왜 잘못된 것이고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글의 주제가 된다.

22. 적절성을 나타내는 어휘 뒤의 흐름

proper, appropriate, desirable, suitable(적절한), certain 단어들은 무엇이 적절한 것인지, 그 특정한 것이 무엇인지

뒤에서 설명을 확인해야 한다. (예: 특정 지역 아이들은 평균 신장이 컸다 ➔ 거기가 어딘지, 걔들은 왜 큰 것인지 뒤에서 상술됨)

23. 반대 논리를 통한 역추론
주어진 문장의 논리와 정반대의 상황을 떠올리고 추론해 본다. (예: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끼면 애착 시스템이 비활성화된다" ➔ '그럼 아이가 불안하면 애착 시스템이 활성화되겠네'라고 반대로 받아들이기)

24. 첫 문장은 공들여 읽어라
첫 문장을 제대로 읽으면 뒤를 다 안 읽어도 전반적인 내용 추론이 가능하고, 이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술술 읽힌다. (예: "많은 부모들이 공부는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고 착각들을 한다" ➔ '공부는 노력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겠구나. 그럼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찾아봐야지'라고 예측)

25. 독자의 상상과 생각을 자극하는 구간
"자, 생각해봐! 한번 상상해봐!" (Think about it / Imagine that~)라고 말하는 부분 근처에 필자의 진짜 주제가 냄새를 풍긴다.

26. 외래종 관련 지문의 핵심 포인트
어려운 외래종 이름은 건너뛰고 ➔ 어느 동물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 이 외래종을 제거하는 방법은 있었는지 / 제거 시 부작용은 없었는지를 중심으로 읽는다.

27. 빈칸이 가운데에 뚫려 있는 경우
빈칸 뒤가 구체적 진술(Specific)일 가능성이 높다. 뒤쪽에 for example이 나온다면 그 부분을 읽고 일반화(General)하여 빈칸을 채워야 한다. 오답 선지 중에는 for example 부분에 나온 구체적인 단어를 그대로 쓴 함정이 많으니 그것부터 제낀다.

28. 첫 문장에서 대조/비교가 나오는 경우
유사점이 있으나 결국 다른 특징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글이다. 상반된 두 개가 나온다면 한쪽을 더 부각해 준다.
예시: 단거리, 장거리 달리기 - 같은 달리기라 비슷해 보이지? ➔ 근육 쓰는 게 달라. 단거리는 [A]이고 장거리는 [B]이다.
사실 살을 빼는 데에는 장거리가 훨씬 낫다. (한쪽 부각)

: 분류하는 타입이 나올 경우 group이나 categories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각 종류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글이다. (first, next, last와 같은 연결사를 잘 보면 훨씬 쉽다.)

29. 선택지의 매력적인 미끼를 조심하라
지문에서 뭔가 눈에 확 띄었던 단어가 선택지에 그대로 단독으로 있다면 의심해야 한다. 특히 요약문 문제에서 출제위원이 파놓은 함정일 확률이 높다.

30. 빈칸이 마지막 문장에 있다면? 바로 앞 문장의 '연결어'를 보라
원리: 빈칸이 맨 마지막 줄에 뚫려 있다면 지문 전체의 결론을 요약하라는 뜻이다. 이때 바로 앞 문장에 Therefore, Thus, Hence, As a result 같은 인과 연결어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스킬: 빈칸 문장만 보고 당황하지 말고, 바로 앞 문장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여 그대로 결론으로 도출(재진술)하면 첫 줄부터 다 읽지 않아도 답이 나온다.

[법원직 어법공식21]
<u>공식 #1. 주절이 과거면 종속절은 반드시 과거[완료] / 3가지 예외를 제외하고!</u>
- 주절의 시제가 현재/현재완료/미래라면 ➔ 과거완료를 제외한 모든 시제가 나올 수 있다!
- 과거 완료는 과거[완료]시제하고만 쓰일 수 있다.
- 시제 일치 예외: 불변의 진리 / 습관 ➔ 무조건 현재
 역사적 사실 ➔ 무조건 과거
 시간 & 조건(~라면)의 부사절에는 will이 못나온다!
 (when과 if는 부사/명사/형용사절 구분필요)

<u>공식 #.2 중요필수 / 주요제명(suggest)다음 종속절에 반드시 동사원형/단 suggest,insist는 "제안하다"와 "암시,시사하다"를 구분한다.</u>

- 중필 형용사: Important (= of importance), essential, crucial, vital necessary, imperative
- 주장,요구,제안,명령 동사: insist, maintain, demand, ask, require, request, suggest, advise, recommend, propose, command, order, urge **S insist that S + (not) 동원**
- 단 insist, suggest가 사실전달을 뜻 (암시하다/시사하다) 일때는 시제와 수 일치! - 해석하면 "해야한다"가 어색함 The evidence suggested that the man had been killed in the room.

공식 #.3 가정법은 주절과 종속절 모양일치 / 도치 / 유사가정법 정리 !

- 과거: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Were I a bird, I could fly to you.
- 과거완료: If you had tried it, you could have done it. → Had you tried it, you could have done it.
- 혼합: If they had started at that time, they would be here now. → Had they started at that time, they would be here now.
- 가정법미래: If I should see him, I would ask him to call you. → Should I see him, I would ask him to call you.
- 불가능한 가정법 미래: If I were to be born again, I would marry you. → Were I to be born again, I would marry you.
- 유사 가정법은 종속절의 시간부사구를 보고 판단
 I wish S 과거 (현재 이러면 좋을텐데)
 I wish S had pp + 과거시간부사구 . (과거에 이랬으면 좋을텐데)
 S V as if S 과거. (현재에 마치 ~ 인 것처럼)
 S V as if S had pp + 과거시간부사구. (과거에 마치 ~ 였던 것처럼)

공식 #.4 수동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어법문제! 반드시 공식 외운다.

- **수불동사는 무조건 수동태 불가:** happen / occur / arise / arise / exist / (dis)appear / consist of / result in / result from / belong to / suffer from / 5감 동사 / remain / seem/ appear / resemble / have / lack / cost / have / let
- **자 → 수동태 x (단 전치사 있으면 OK - 전치사 + by 연속 나와야 수동태 가능)**
- **타 → 뒤에 N 있으면 → 능동 / 없으면 → 수동 (**단 4/5형식은 예외: give,offer,consider,call)**

I wanted to get yelled at by her for the first time. (법원 17)
We shared a quality book. A quality book was shared by us.
I was given a candy by her. (받았다) He is considered (to be) a genius by us

- 사역동사 / 지각동사의 수동태는 목적보어가 ① 동사원형이면 → toV로 ② 그 외의 것이면→그대로 !

She saw him get out of the room. → He was seen **to get** out of the room by her.
She saw him getting out of the room.→ He was seen **getting** out of the room by her.

공식 #.5 2형식/5형식 - 보어의 품사 판별

- 2형식: **감각(look)/판단(seem)/판명(prove)/변화(grow, go, fall, turn, get)/유지(remain) 동사다음엔 형용사 or 명사를 보어로!** It became well. (x) → It became good.
- 5형식: 1) 사역(let,have,make)&지각(see*watch*notice*observe, hear, smell, taste, feel)+O.+동원/형/분/명
 그 외 5형식 동사 (get/ask/allow/want/advise/force) + toV/형/분
 2) 목적보어의 형태는,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로 (to) V, Ving vs. pp 구분

She had him carry her bags. / She had her bags carried.
She asked him to carry her bags. / She asked her bags (to be) carried by him.

공식 #. 6 4형식이 3형식 될 때, 전치사 정리

ask, demand (질문 요구) 직목 of 간목 / buy, do, get, make, cook --> 직목 for 간목
나머지(give, offer, teach, serve, owe) 는 모두 직목 to 간목

공식#. 7 병렬 구조 주의할 요소들 (최다빈출)

- A가 더 좋아요: prefer A(N / Ving) to B (N/Ving) / prefer to A rather than (to) B / may as well A(동원) as B(동원) / would rather A (동원) than B(동원)
- 상관접속사 A 와 B 의 품사, 형태 (동명사, toV), 수 일치에 유의
- 나열 했을 때: A, B, and C -->문장 맨 앞으로가서 나열된 세 가지 이상의 요소가 무엇인지 찬찬히 따져야 한다. : 밑줄 친 단어 앞이나 뒤에 and가 있으면 / 이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됨

- toV 가 병렬일 경우 and 다음의 toV는 V만 있어도 어법상 문제 없다. toV and V (o)
- 비교할 때 두 대상이 똑같은지 확인해야함. 단수명사 of A is 비교급 than that of B.
 복수명사 of A is 비교급 than those of B.

공식 #.8 지문형 어법문제 특화된 수일치

1)상관접속사 주어

both A and B →무조건 복수 / A as well as B or A, not B→ A가 주어 / 나머지는 모두 B가 주어 →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not A but B, not only/not simply/not just/not merely A but (also) B

2) A of B 형태 1) A lot of / a number of / a great deal of **를** 제외하고는 A가 주어 → A의 수에 동사 일치

3) 동명사/ 부정사/ 명사절주어는 3인칭 단수이다.

4) 부분사 주어: A number of 복수명사 + 복수동사 The number of 복수명사 + 단수동사
Many + 복수 명사 + 복수 동사 Many students are good.
Many a 단수 명사 + 단수 동사 Many a student is good.
부분사(all,most,some,half,분수,% + of +the + N → 동사는 N의 에 따라 달라진다.
All + 가산 명사(복수형) + 복수동사 / All + 불가산 명사(단수형) + 단수동사
one of the 복수명사 + 단수 동사: One of the men is a criminal.
each of the 복수명사 + 단수 동사: Each of them is different.

5) 주어에 수식이 붙은 경우 / 수식어를 제거하고 / 수식당한 명사에 동사의 수를 맞춘다.
N + 전치사구 / to V / 분사구 / 삽입구/ 동격절 / 관계사절 + V

6)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 선행사와 수를 일치 시킨다.(선행사가 전치사구인 경우 해석)

7) 도치구문의 수일치는 동사 다음에 나온 명사에 맞춘다.
There / here + 동사 + 주어. 부정어구 + 동사 + 주어. / 보어강조 도치 + 동사+ 주어

공식 #.9 manage+toV vs. mind+Ving , 목적어자리의 toV / Ving구별

To V: 미래지향/선택적: afford, hesitate, pretend, manage,want,wish,decide,expect,plan,offer,fail intend,refuse,seem

Ving: 과거지향/회피적/진행: mind,avoid,deny,quit,enjoy,c**onsider,suggest,recommend**,give up,keep, postpone

둘다 가능 1) 뜻차이 없이: 시작,끝,선호여부: start, like, hate 2) 시제 차이: remember, forget
3) 뜻차이 있음: regret, stop, try, mean

Regret to - 유감 vs. regret Ving- 후회 / stop toV-하기 위해 멈추다 vs. stop Ving- 하기를 중단하다

그 외 ving 구문: have difficulty Ving /spend o Ving/ end up Ving / it's no use Ving

공식 #. 10 look forward to + Ving! 전치사 to를 구분한다.

look forward to Ving / be used(accustomed) to Ving /contribute to Ving / Object to Ving / be opposed to Ving / Devote oneself to Ving=be devoted to Ving / With a view to Ving /When it comes to Ving / Be equal to Ving / Be exposed to Ving / contribute to Ving / come close to Ving / be sugject to Ving

공식 #. 11 분사의 형태 = 수동태공식

1) 명사 앞 자리: 능동이면 현재분사 / 수동이면 과거분사 (확률적으로 과거분사 가능성이 높음)
2) 명사 뒤 자리: 자/타 동사 구분과 전치사 유무로 쉽게 구분됨 (수동태 공식과 동일)
★ 뒤에 N → Ving (예외: 수여/call/name/consider)
★ 뒤에 전명구 → pp (예외: 자동사 but 셤에 잘 안나옴)

He saw a student greeting a teacher. 타 He saw a student punished by a teacher. 타
He saw a student coming to a teacher. 자 He saw a student given a prize by a teacher. 수여
He saw a student called Mr. Know All by friends. 5형식

3) 수동태가 될 수 없는 자동사 (e.g., happen)은 pp형태도 될 수 없다 → 분사로 쓸 것이라면, 언제나 Ving !
the accident occurred on the road (x) --> the accident occurring on the road (o)

공식 #.12 감정동사는 타동사 / 감정의 원인이 Ving / 감정을 느낀자는 pp

My father was disappointed with I did. My behavior was disappointing.
perplex / bewilder / puzzle / confuse / bore / tire/ satisfy / disappoint / surprise / shock

공식 #.13 분사자리 vs. 동사자리 결정은 V-1 = 접속사 공식으로!

- S+**분사**+ V ~ : The boy **insisting** on his staying was ejected by the guardians.
- S+관계사+**V**+ V~: The boy who **insisted** on his staying was ejected by the guardians.
 V와 분사 구별 후 → 능동/수동 구분 → 시제구분
- **분사구문에서도 마찬가지이나, 주절과 주어가 같지 않아서 주어가 남아있는 분사구문이 있을 수 있음**

1) **분사**, S + V. **Insisting** on his staying, he protested against the government's policy.
2) 부사절접속사 +**분사 ,** S + V. → 접속사가 생략되지 않는 분사구문 (어쨌든 주어없으면 V안됨)
 While **insisting** on his staying, he protested against the government's policy.
3) 부사절접속사 +S+**V**, S +V→ 주어가 있어야 동사가 나올 수 있다.
 While he **was insisting** on his staying, he protested against the government's policy.
4) S1 **분사**, S2 + V → 접속사가 없으면 S V 가 나올 수 없다. (독립분사구문 S1과 S2가 다름)
 He insisting on his staying, **she** decided to leave the company. [수동능동 / 시제 구별 해야함]

- **등위접속사 (and/but/or) 앞이나 뒤엔 동사가 와야 함.**
 S V and (S) V. vs. S V , 분사
 단, S V ~ Ving(분사) and Ving(분사) - 병렬구조
- **Having pp, S V. → 능동임을 반드시 기억한다. (완료분사, 시제만 주절보다 앞설뿐!)**
 (Having been) pp, S V. → 수동이다.

● **With +명사+분사: 명사가 분사 하면서 / 명사가 분사하기에 : With +명사+(being)+형 or 전명구 도 가능!**

With the spring coming, it's time to go shopping.
He was sitting on the chair with his hands in his pockets. (전명구)
He was sitting on the chair with his eyes open. (형)

공식 #. 14 접속사는 완전/불완전 절 / 쓰일 수 있는 위치 / 접속사로 착각하는 전치사

- what/ which / who 다음은 불완전 문장 / 나머지는 완전한 문장
- 의문사 + S + V 어순 (의문사 V S 틀림) He will ask you how old are you. (x)
- 전치사 + that S V (x) / 나머지는 가능
- What vs. that 구별: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 vs.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문장: 주어/목적어/보어/전목 중 하나가 없는 것: 이때 실수 하지 않도록 전치사구.부사앞에 반드시 끊기
- whether는 다 되고, if는 동사 다음자리에 if S V 로만 올 수 있다. I wonder if he will pass. (o)
- Because / since vs. Because of / due to / owing to / thanks to/ on account of
 While vs. During / for
 Although vs. In spite of / despite
 by the time vs. by

공식 #. 15 관대불완 vs. 관부완전=전관대완전 / that 앞에 컴마못와 / however 형부주동

- **관계 대명사 뒤에는 반드시 1) 동사는 있고 2)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 **whose는 뒷문장에 관사 없는 주어가 나온다는 점에서 불완전! vs. of which 는 관사까지 나와서 유일하게 완전한 문장이 나옴! 또한 whose는 사람 사물 선행사 모두 가능**
- **What 관대 앞에는 선행사 못온다**. *I couldn't get it what he told me. (x)*
- **that은 전치사 다음에 못 오고 / 컴마 다음에 나올 수 없다. --> 전치사+which or whom / , who or which (o)**
- **관계부사 where 다음엔 완전한 문장 / 관계부사 = 전치사+관대 이므로 where = in which**
- **However 형/부/형명 S V, S V. 아무리 형용사 /부사 할지라도 ~** (형: 보어없음 / 부: 완전절 / 형명 - 주어나 목적어없음)

공식 #. 16 명사의 수, 자주 나오진 않지만, 암기하지 않으면 추론으로 풀 수 없다.

● **무조건 셀 수 없는 명사: information knowledge evidence proof advice news // stationery jewelry poetry machinery pottery scenery // furniture equipment clothing weather traffic baggage luggage money homework**

- 학과, 질병, 게임, 국가 - 단수 Physics / Diabetes / Billiards / The United States is ~ . (o)
- 상호복수: be on good terms with / make friends with / shake hands with / take turns Ving (o)
- 한단단: 한정적 용법의 단위는 단수다

three hundreds soldiers(x) --> three **hundred** soldiers (o) **hundreds of** soldiers (o)
a ten-dollars bill (x) --> a ten-**dollar** bill (o)
the twenty-feet-high buildings (x) --> the twenty-**foot**-high buildings (o)

- many / a number of / not a few / quite a few / few (fewer) + 무조건 복수형 명사
- much / a great amount*deal*quantity of / not a little / quite a little / little (less) + 무조건 단수형 명사 (셀 수 있는지 여부는 명사 뒤에 "s" 있는지로 판단하면 된다.)

공식 #.17 2개 열거설명: one + the other / 3개 열거설명 one, another, the other!

- 복수이면 ~s / 지칭마지막 것이면 the+ / another는 무조건 단수
- Another / other는 한정사와 대명사 둘 다 가능 others는 대명사로만 쓰인다
 others students (x) --> other students (o) or others (o)
- 관용표현 - each other: 둘 사이의 서로서로 / one another: 셋 이상의 서로서로
 - one after the other: 2 차례로 / one after another: 3 차례로
 - A is one thing and B is another: A와 B는 별개의 문제이다.

공식 #.18 a붙은 형용사는 보어자리에만 올 수 있다.

- 한정형용사는 명사 앞에서만 / 서술형용사는 보어자리에 올수 있다.

서술형용사 (a 로 시작함): alive / asleep / alike / afraid / alone / ashamed / awake / aware /
한정형용사: elder
The asleep baby is my nephew. (x) --> The sleeping baby is my nephew. (o)
He was an alone member. → He was a lone member. (o) He let me alone. (o)

공식 #. 19 비교구문: 품사확인 / 병렬구조 확인

- as와 as 사이에는 반드시 원급이 와야 한다. This is as heavier as that. (x)
- 배수사/분수가 as - as 앞 / 비교급 앞 에 올 수 있다. This is three times as heavy as that.
- 라틴어 비교급 (-or) 은 than (x) → to (o) superior to (o)
- The 비교급 S (V) , the 비교급 S (V). 항상 이구조로 쓰여야 한다. (형/부/형명 품사 판별도 나올 수 있음)
- 비교급 강조는 FAMES very는 원급강조
-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는 반드시 the가 붙고 / 부사는 안붙는다.
- 비교하는 두 대상은 내용 및 형태를 일치시켜야 한다.
- 최상급 of 복수명사 / in 단수명사 =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

공식 #. 20 도치가 되는 조건을 정확히 알아둔다.

- 부정부사(구/절) 문두: 단, 부정부사절 일 경우, 주절이 도치

(never, hardly, scarcely, rarely, not only, little, only / 전치사+no+명사 , only+전치사구 / **not+접속사**)

- There V S. (단 주어가 대명사이면 도치 하지 않는다) There is a teacher. / There she is.
- 가정법 조건절 if 생략하면 도치 Were I a bird, I would fly to you.
- 보어 강조 → 형/분 + be + S (So) serious was his anxiety (that he lost his health).
- 장소 전치사 + 명사 + V + S On the hill stands the man wearing a hat. (이때는 do동사 안나옴)
- So / neither/ nor +V + S : S도 역시 V 하다/안하다 He lives in Seoul, and so do his parents.
- As +V +S → S도 V 하듯이 Jane goes to church, as do her parents. (해석해야함)
- 형부분명 as S V (도치 아님/형부분명만 앞으로나감) = (Al)though S V 형부분명
 - 이때, 형부의 품사 판별도 출제 가능

공식 #. 21 대동사: do / 조동사/ be 동사 셋 중에 무엇이 맞는지 - 앞 절에서 확인

- I am happy, and so is he. I can do it, and so can he.
- I have not drunken for a quarter century, nor has my wife.
- I have not drunken for a quarter century, and neither has my wife.
- I studied as hard as he did.

초고빈출 숙어100

1. lead to : 야기하다 , ~라는 결과를 낳다, ~에 이르다
2. result in : ~라는 결과를 낳다
3. result from / stem from : ~에서 기인하다, ~로부터 나오다
4. be likely to : ~할 것 같다, ~할 가능성이 있다
 be unlikely to : ~할 것 같지 않다, 가능성이 없다
5. have to do with : ~와 관계가 있다
6. contribute to : ~의 원인이 되다, ~에 기여하다
7. tend to : ~하는 경향이 있다
8. come to V / get to V : ~하게 되다
9. fail to V : ~하지 못하다 / cannot fail to : 반드시 ~하다
10. play a role[part] (in) : ~에 역할을 하다
11. prevent, stop, keep A from B : A가 B하는 것을 막다, 금지하다
12. such as : ~와 같은
13. take step[action, measure] : 조치를 취하다
14. the effect of A on B : A가 B에 미치는 영향
15. based on : ~에 바탕을 두고
16. refer to : ~을 나타내다, ~을 가리키다
17. engage in : ~을 하다, ~에 참여하다
18. derive from : ~에서 나오다,유래하다,파생되다
19. deal[cope] with : ~에 대처하다, ~을 다루다
20. no[nothing, little] more than : ~에 불과한. ~에 지나지 않는
21. other than : ~을 제외한, ~외에 = aside from, apart from, besides
22. in favor of : ~에 찬성하여, ~를 지지하여, ~에게 유리하게
23. rather than : ~라기 보다는
24. take place : 일어나다, 발생하다
25. not necessarily : 반드시, 꼭 ~한 것은 아니다
26. regardless [irrespective] of : ~에 관계없이
27. at the cost [expense] of : ~을 희생하여, ~의 대가를 치르고 cf) at all costs 무슨 수를 써서라도
28. in terms of : ~의 면에서, ~의 관점에서
29. as a means of : ~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30. be told : 듣다
31. contrary to : ~와 반대로
32. depending (up)on : ~에 따라
33. on one's own : 혼자서, 독립적으로
34. for one's sake : ~을 위해서
35. not to mention : ~는 말할 것도 없고 = let alone
36. serve as : ~로서의 역할을 하다
37. put into action[practice] : 실행하다
38. the last thing[person] : 절대로 ~하지 않을 것[사람]
39. take ~for granted : 당연하게 여기다
40. as opposed to : ~와 반대로, 대조적으로
41. account for : 설명하다
42. have bearing on : 관계가 있다
43. end up : 결국, 끝내는 ~하다
44. in the aftermath[wake] of : ~의 여파로,
45. not A any more than B-B가 아니듯 A도 아니다
46. be in the spot light 주목 받다
47. as well 역시
48.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49. in light of ~라는 견지에서
50. take advantage of 이용해먹다 (나쁘게)
51. be engrossed in 에 몰두하다
52. stick to = cling to 에 들러붙다 고집하다
53. look forward to를 고대하다
54. be associated with 와 관련 있다
55. aim at 를 목표로 삼다
56. engage in 에 참여하게 되다, 종사하다, 가담하다
57. take part in 참여하다
58. pretend to 인 체하다
59. take steps / measures - 조치를 취하다
60. be occupied with 에 사로 잡히다
61. take charge of를 떠맡다
62.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언급하다 / 부르다.
63. take off - 벗다 / 이륙하다 덜어내다
64. part with 헤어지다
65. exert effects / power / pressure on 에 영향/압력을 행사하다
66. be marked by - 로 특징지어진다.
67. look upon A as B : A를 B라고 여기다.
68. on the excuse that S V : ~라는 핑계로
69. only after S V: ~ 하고 나서야 비로소
70. owing to - 덕분에 때문에
71. by any means: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72. manage to V 용케도/ 그럭저럭 V해나가다
73. opt for 선택하다
74. as of this moment: 지금 이순간
75. as far as - 하는 한 = insofar as
76. no less than - 와 마찬가지 이다.
77. be better off 처지가 낫다
78. inflict on 고통을 가하다
79. be of no use -쓸모없다
80. inversely proportional 반비례인
81. be rooted in = be based on
82. give way to - 바꾸다
83. play it safe - 위험을 무릅쓰지 않다
84. make the case that -를 주장하다
85. to be concise: 간략히 말하면
86. lay down 정하다
87. no less of - 대단한
88. in accordance with -에 따라서
89. anything but - 결코아닌
90. let go of 보내다
91. as such 그렇게
92. be concerned about 우려하다
93. be informed 듣다
94. be asked to v 하라고 요청받다
95. To illustrate 예를 들면
96. in a nutshell 요약하면
97. pros and cons 단점 장점 / 찬 반
98. A be outweighed by B : B가 A보다 더 중요하다 / 더 무겁다
99. A be outshadowed by B : B에의해 A의 장점이 가려지다.
100. A offset B : A가 B를 상쇄하다

형 법

박지용 교수(박문각 전임교수)

[판례 1] [1]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보호대상인 피해자는 같은 조 제1항의 보호대상인 피해자와 동일하게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이를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은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2]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즉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야 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 대판 2025. 9. 4. 2025도7058

[판례 2] 송금메모 메시지를 작성한 후 송금메모 기능을 통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으로 인식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대판 2026. 3. 12. 2025도12709

[판례 3]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였으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지속, 반복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판 2026. 4. 16. 2026도2108

[판례 4]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판 2023. 7. 17. 2021도11126 전합

[판례 5]링크의 게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연결하는 정도를 넘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23. 10. 12. 2023도5757

[판례 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부분의 경우 위 고시 제3조는 모법이자 형벌법규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와 결합하여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므로 위 고시 개정은 형벌법규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고시 개정은 쟁점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고, 이로써 쟁점 공소사실 위반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대판 2026. 1. 15. 2025도17027

[판례 7]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벌규정이 적용되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판 2025. 8. 14. 2022도8664

[판례 8] 경기도의 직속기관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없는 ○○소방서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대판 2026. 3. 12. 2025도10321

[판례 9]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위 양벌규정은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취득 및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고,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대판 2023. 12. 14. 2023도3509

[판례 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개념이다. 대판 2025. 7. 18. 2023도16500

[판례 11]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은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안전지대를 횡단하려는 차량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여 안전지대의 횡단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 대판 2025. 6. 12. 2025도1049

[판례 12]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개통된 선불유심을 A의 관리 아래 그대로 둔 채 **그것이 실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A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취득한 유심 중 일부가 실제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사용된 점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대판 2025. 4. 24 2025도265

[판례 13]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대판 2024. 12. 26. 2024도1856

[판례 14] 미용문신시술을 받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외모를 개선하거나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는 등 미용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인점, 통상적인 문신시술 형태와 시술 부위에 비추어 보면 시술자에게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문신시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26. 5. 21. 2021도15611

[판례 15]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는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루어진다. 서화문신을 시술하는 사람 역시 피시술자가 희망하는 글자 또는 그림, 무늬, 색상 등이 피부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장식적·예술적·미용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문신의 전형적 방법에 따른 문신행위를 할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문신행위의 주된 목적 또는 부수적 목적으로 삼아 문신행위를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26. 5. 21. 2022도13370

[판례 16]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후자의 경우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할 뿐, 성폭력처벌법 제15조가 다시 적용되어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2025. 3. 2 2023도10405 전합

[판례 17]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우리 형법의 독특한 규정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식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사회가 내리는 공적 평가에 의하여 사회상규성이 인정된다면 그 행위를 실질적으로 위법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제정 형법 시 도입되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형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별적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법령이나 업무로 인한 행위로 포섭되기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이다. 대판 2023.5.18. 2017도2760).

[판례 18]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대판 2025. 9. 4. 2022도16512

[판례 19] 甲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8세 여아 A에게 2회에 걸쳐 甲의 성기 사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A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휴대전화를 통하여 A에게 피고인의 성기사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A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A의 어머니가 甲의 메시지를 차단하여 A이 실제로 확인하지 못한 메시지는 A의 휴대전화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 저장되어 A가 언제든지 그 메시지에 손쉽게 접근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甲의 행위는 구 아동복지법(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대판 2025. 7. 18. 선고 2025도3890

[판례 20] [1]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한편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그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어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하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일부의 행위를 실행하였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면서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피고인이 그 범죄사실을 인식하거나 혹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물의 성질상 피고인의 범의 내지 공모사실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그 범의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대판 2024. 12. 12. 2024도10141

[판례 21] [1]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3] 강요죄는 개인의 의사결정 또는 의사실행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강요죄는 개인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일반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2025. 9. 4. 2025도9690, 2025보도72

[판례 22]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사기 범행과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 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대판 2025. 9. 25. 2024도18174

[판례 23]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는 그 입법 목적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25. 7. 3. 선고 2025도4969

[판례 24] 임상시험 대행기관 운영자인 피고인이 신약 개발 관련 임상시험을 위탁기관인 피해자 甲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은 대로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甲 회사에 관련 비용을 계속적으로 청구·수령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甲 회사의 신약 개발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를 기망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교부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위계로써 甲 회사의 신약 개발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는 별개로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2025. 9. 11. 선고 2024도1932

[판례 25] 형법 제35조 제1, 2항의 누범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누범으로 규정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누범기간 적용의 기준이 되는 **형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누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이상, **그 후 그 형이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실효법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는 여전히 해당**한다. 대법원 2026. 1. 29 2025도15970

[판례 26] [1]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라면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고 하려면 적어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甲**이 존속인 A의 집 현관문 앞에 치사량의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놓아두고 간 경우** 甲이 위험한 물건인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협박 범행에 이용하였더라도 **위 소주병을 사실상 지배하여 고지하는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판 2026. 4. 16. 2025도19409

[판례 27] 甲이 A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아파트 주거지 현관문 앞에 과도와 라이터를 놓아두고 간 경우, 甲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고 A가 이를 발견한 때에는 甲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으므로, 甲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협박 범행에 이용하였더라도 위 물건들을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A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판 2026. 4. 16. 2024도12341

[판례 28]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신체에 가하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甲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A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A가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은 행위**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단순히 피해자를 놀라게 하거나 겁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폭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수적인 결과로 피해자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26. 4. 2. 2023도5440

[판례 29]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특수상해죄로,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2024. 6. 13. 2023도18812

[판례 20]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의하면 직계비속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다. 이러한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서 형법 제27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한편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그 제한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양의무와는 별개이므로,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라도 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였다면 형법 제273조 제2항의 존속학대죄에 해당한다**. 대판 2025.11.6. 2025도12963

[판례 21]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미성년자가 보호감독자나 그로부터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경우는 그들도 이러한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25. 6. 12. 2024도17056

[판례 22]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집단적 공동생활이라는 군조직의 특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이를 기본권의 적법한 제한이라고 새길 수 있을 정도로 **군기 및 군율의 확립·유지 요청이 비교적 큰 공간이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행위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현행 규정의 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1, 2행위가 동성 군인 사이에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군형법상 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대법원 2025. 4. 24. 2022도15950

[판례 23] 군형법은 제64조 제3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형을 높여 처벌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해 형법 제310조와 같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나 법규범의 체계등을 고려할 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는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 대해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 4. 16. 2023도13333

[판례 24] '미쳤구나'와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라는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판 2025. 5. 29. 2024도14555

[판례 25] 성명불상자(닉네임 '생략')가 인터넷 ○○일보 자유게시판에 「오늘 공소외인 이틀연속.. 어쩌구한 △△일보 기자 면상」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작성한 기사들의 제목과 피해자의 사진, 이름이 나온 기자 정보란을 캡처한 게시물을 작성·게시한 사실, 피고인이 2020. 11. 10. 12:44 무렵 위 게시물에 **"꼰대로 돌아가자면 어린놈의 색이가"**라는 댓글을 작성한 경우, 이 사건 댓글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판 2024.9.27., 2023도17996

[판례 26]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 대법원 2023. 2. 2. 2022도4719

[판례 27] [1]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의사표현의 일환으로서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할 수 없다.**
[2]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또는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는 있다. 대판 2025. 9. 11. 2022도1665

[판례 28] [1]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임 회장인데, 甲이 후임 회장으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甲에게 그 인감도장의 인도를 거부**하고, 사업자등록증 원본의 반환요구를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 甲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甲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지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甲으로부터 인감도장 등의 인계를 요구받자, **단순히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인감도장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행위가 위력으로써 甲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판 2025. 9. 4. 2024도7386

[판례 29] [1]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로서, **재물을 점유하면서 향유하는 사용 · 수익권은 재물과 전혀 별개의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물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은 형법상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오피스텔을 임대하였다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체 한도 제한으로 임대차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추후 반환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에게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오피스텔로 이사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에 관한 점유권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오피스텔을 점유하며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피고인의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 3. 12. 2023도17200

[판례 30] [1]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휴대전화에 설치된 피해자 회사들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금용도, 보유자산, 연소득정보, 부채정보, 연소득 대비 고정 지출, 신용점수 등을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비대면 자동심사 방식의 대출)**되어 송금 받을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대출신청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이 대출신청을 확인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 등 사람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5. 3. 27. 2024도18441).

[판례 31]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여기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대판 2025.12.4. 2024도11353

[판례 32] 피고인이 피해자 甲이 다른 사람과 공동소유하는 토지에 권원 없이 사과나무 등 과수를 식재하고 2021. 10.경 및 2022. 10.경 두 차례에 걸쳐 사과를 수취하여 사과나무를 손괴하거나 사과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과나무의 천연과실인 사과를 수취하는 것은 원물인 사과나무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과나무의 효용 자체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사과나무를 점유하는 피고인과 甲 사이에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위탁신임관계가 형성되어 피고인에게 사과나무의 과실인 사과를 甲을 위하여 그대로 보관·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사과나무에 대한 재물손괴죄와 사과에 대한 횡령죄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2025. 7. 17. 2025도978

[판례 33] 공유물을 목적으로 한 제한물권이나 채권을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공유자가 공유물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공유물을 목적으로 한 제한물권이나 채권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이러한 제한물권이나 채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범인인 공유자는 '소유자'로서 '자기의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하여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대판 2026. 1. 15. 2024도7611

[판례 34]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거나 위 조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를 준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5. 4. 24 2024도16766

[판례 35] 국립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 후 위 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교육공무원 지위와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내부 사무처리 기준 등에 직무상 근거를 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술심사평가위원은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에 해당할 수 없다**. 대법원 2025. 8. 14. 2025도6266

[판례 36]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다. 그중 법률에 따라 체포된 자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되거나 긴급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3)된 자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형사소송법 제212조)된 자 등을 말한다. **체포된 자에 대하여 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있었어야 한다** 대법원 2025. 6. 26. 2025도3061

[판례 37] 생부가 인지하지 않아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의 자연적 혈연관계로 말미암아 도피시키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혼인외 출생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24. 11. 28. 2022도10272

[판례 38]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교법인 등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경우 이에 관한 사건은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립학교 교원인 A에 대한 해임처분은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한 증언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한 진술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판 2026. 1. 29. 2025도18022

[판례 39]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대판 2026. 3. 19. 2024도163(전합)

형사소송법

이준현 교수(박문각 대표교수)

- 형사소송법 관련 최신중요판례 OX -

1.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O , X)

2.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 X)

3. 약물중독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정도, 마약 투약으로 수사받던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여 특별감경 양형요소로 반영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주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O , X)

4.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법원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공판심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O , X)

5. 재판기록의 공개 가능성은 재판의 공개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조서 등이 공개된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어 조사가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그 소송서류 등을 열람·등사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형사재판확정기록의 열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의 공개제한사유로서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O , X)

6. 형사재판확정기록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열람·등사신청이 허용되고 이에 관한 검사의 거부나 제한 처분 등에 대한 불복은 준항고 방식에 의한다. (O , X)

7. 송달영수인의 신고가 있으면 송달은 신고된 장소와 영수인에게 하여야 하고 송달영수인이 송달받은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상소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의 소송절차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O , X)

8. 검사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부패범죄나 경제범죄 등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따라 수사권 행사가 불가능한 범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한 후 1차적 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에 위반하여 개시된 수사절차에 이어진 공소제기를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O , X)

9.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포함된다. (O , X)

10.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이른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그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O , X)

11.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에 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았고 대리에 의한 고소 및 고소취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36조를 준용하는 근거규정도 두지 않았지만,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관해서도 고소 및 고소취소와 마찬가지로 대리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O , X)

12.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비밀과 동일한 의미로 보아야 한다. (O , X)

13.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도 여기에서의 '청취'에 포함된다. (O , X)

14.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므로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O , X)

15.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위 녹음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O , X)

16.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O , X)

17.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경우라도 단지 심문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O , X)

18.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통해 검사의 영장 청구에 관한 판단이나 판사의 영장 발부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나 자료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나 자료를 일부라도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경우와 같이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의 영장 발부에 관한 결정'이나 '영장의 집행 결과에 따른 피의자의 체포 내지 구속 그 자체'에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나 판단·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O , X)

19.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을 포함하여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 X)

20.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는 요건인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로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도 그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O , X)

21.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나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라도 그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는 없다. (O , X)

22.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만 기록되어 있고 별도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O , X)

23. 신분적 재판권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조가 정한 군인, 군무원 등이 아닌 사람이 소유·소지·보관하고 있는 물건도 해당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과 압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상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 X)

24.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그 내용이 동일하게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자도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그에게도 참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O , X)

25. 피압수자에게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피압수자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의사를 명시하거나 또는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할 필요가 없다. (O , X)

26.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드시 미성년자에게 그 영장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도 있다. (O , X)

27. 수사기관의 지시·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인(私人)이 자기 외의 제3자가 지배·관리하는 물건을 취거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의한 직접적인 강제처분으로서의 압수·수색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영장의 제시, 참여권의 보장 등 절차의 준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O , X)

28.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절차에 참여한 참여자와 관련하여 해당 절차의 적법요건이 갖추어졌는지는, 수사기관이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포함하여 압수·수색 당시를 기준으로 외형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와 참여자의 객관적 능력에 관한 법률적·사후적인 판단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O , X)

29.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주거주 등이나 이웃 등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위법하며, 주거주 등이나 이웃 등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여자에게 최소한 압수·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주거주 등이나 이웃 등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도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O , X)

30. 피의자가 주거주 등인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최소한 압수·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없다면 그 피의자만 참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만일 이 경우 참여능력이 없는 피의자만이 참여하였다면 그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참여능력이 있는 이웃 등을 함께 참여시켜야 할 필요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O , X)

31.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도 일반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O , X)

32.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되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 (O , X)

33.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O , X)

34. 영장에 의한 압수 및 그 대상물에 대한 확인조치가 끝나면 그것으로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압수 직후 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목록 작성·교부의무를 해태·거부할 수는 없다. (O , X)

35.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피의자 기타 사람이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에도 그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참여권자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O , X)

36.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음식점에 출입하여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O , X)

37. 공소사실의 취지가 명료하면 법원이 이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으나, 공소사실의 기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O , X)

38. 공범 사이의 처벌에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O , X)

39.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O , X)

40.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특정 공소사실을 철회하였다가 다시 추가하는 등과 같은 공소장변경도 얼마든지 허용된다. (O , X)

41.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에는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O , X)

42.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증인에 대하여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그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증거(녹음파일 등)도 공판정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 증거능력이 있다. (O , X)

43.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제294조의2 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한 경우, 위 진술과 서면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O , X)

44.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한 감정인을 법원이 증인 또는 감정증인으로 소환한 경우라도 그 감정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았다면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 증인과 동일하게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O , X)

45. 법관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라도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O , X)

46.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우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O , X)

47.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전파가능성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O , X)

48. 물가안정법에서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인 '폭리 목적'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O , X)

49.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그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O , X)

50. 피고인의 자백에 임의성이 있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O , X)

51.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내지 핵심증거이고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는 경우면 그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O , X)

52.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 내용이나 진술의 맥락·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함부로 허용할 수 없다. (O , X)

53.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에 대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라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한 요건을 갖추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O , X)

54.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피의자가 당해사건 수사기관에 한 진술이 인용되어 있는 경우, 그 진술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된 신문조서나 진술서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O , X)

55.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를 말하는 것이다. (O , X)

56.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나,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그 서류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비록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라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서류에 해당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O , X)

57.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그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그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O , X)

58.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면 처벌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라도 이러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 (O , X)

59. 형벌조각사유로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일정한 범죄의 경우 형의 면제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28조 제1항의 규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O , X)

60.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람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O , X)

61.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사안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만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O , X)

62.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는 기속되지만, 그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에는 기속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O , X)

63.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하는 것은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모순저촉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O , X)

64.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방조범으로 인정하면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을 뿐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무죄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O , X)

65. 적법하게 제기된 항소에 의해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도 비약적 상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제1심법원으로서는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된 경우에는 항소사건으로서 항소심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O , X)

66.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해서도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O , X)

67.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 (O , X)

6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서 제주지방법원에 전속관할권을 인정한 사건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경우에 청구하는 특별재심사건에 한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23조가 적용되어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O , X)

69. 재심청구인은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454조에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시기를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로 제한하는 것과는 달리 그러한 취하의 시기 제한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된다. (O , X)

70. 재심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규정한 범죄의 피해자로서 하는 진술 자체가 재심이유인 '직무에 관한 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거로 제출되었음에도 그 범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하여 확정판결로 증명할 수 없는 상태라도, 재심청구인의 범죄 피해에 관한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만으로 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그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재심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O , X)

71.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사실조사는 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을 따라야 한다. (O , X)

72.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종전 유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O , X)

73. 형 집행을 지휘하는 주체인 검사는 형의 집행순서변경 제도의 목적과 수형자의 기본권 보장의 이념을 염두에 두고 적정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형의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는 그 변경지휘가 있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 X)

74.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적어도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O , X)

민 법

이준현 교수(박문각 대표교수)

- 민법 관련 최신중요판례 OX -

1. 보조생식 시술을 통하여 임신·출산한 자녀를 타인에게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대리모계약'도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하다. (O , X)

2.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O , X)

3.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으로서는 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된다. (O , X)

4. 지급명령 사건이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소송절차에 회부된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O , X)

5.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데, 다만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O , X)

6. 압류할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면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라도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O , X)

7.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따라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비록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종료된 때라도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O , X)

8.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관념의 통지의 성질을 가진다. (O , X)

9.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거나 채무를 일부변제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O , X)

10.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가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시효기간이 지난 후 변제하는 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사해행위의 수익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수익자는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O , X)

1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으나 당초의 소유자 겸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다면 양수인은 매도인과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이에 부합하는 양수인과 매도인 간의 적법·유효한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 (O , X)

12. 여러 사람이 1필지인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하기로 약정하되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된다. (O , X)

13.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 중 각 점유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그 각 점유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각 토지의 일부 공유자로 되어 있다면 그들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 (O , X)

14.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그 환불보장약정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O , X)

15.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 시행 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가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그 점유는 여전히 자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O , X)

1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기존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도록 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은 하였으나 그 시행 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 제11조 및 제12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O , X)

17.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로 이행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다른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하여 가압류등기나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선행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O , X)

18.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 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 (O , X)

19. 분묘기지권에는 '승낙형 분묘기지권',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양도형 분묘기지권' 등이 있는데,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 다음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O , X)

20.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하며, 지역권자가 승역지를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할 때 요역지의 편익과 이용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권설정계약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결정된다. (O , X)

21.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등록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자동차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자동차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O , X)

22.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근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되지만, 근저당권에 대한 근질권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근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 (O , X)

23. 부동산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는데,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전이면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O , X)

24. 민법 제368조 제1항은 공동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의 경매대가 배당에 관하여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란 매각대금에서 해당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동저당권 또는 공동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인 임차주택의 '경매대가'는 매각대금에서 위와 같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나 소액보증금 등을 공제하여 산정하게 된다. (O , X)

25.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O , X)

26.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도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O , X)

27.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특정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의무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또는 유언집행자 취임을 승낙한 때 곧바로 유증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O , X)

28. 매수인이 대금을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체료 약정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 (O , X)

29. 지연손해금이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O , X)

30.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보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증인 등의 변제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고, 오로지 주채무자 자신의 자력만이 문제 된다. (O , X)

31.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이 이전된 시점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O , X)

32. 수익자에게 과실이 있는지는 수익자의 선의 판단에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X)

33.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 X)

34.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 (O , X)

35.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O , X)

36.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대립되는 당사자 사이에 공평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그 동시이행항변권의 포기는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져야 하고 묵시적 의사표시로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O , X)

37. 기간을 정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등 계속적 계약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면 해당 기간의 급부불능을 종국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때 그 계약의 존속 여부는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X)

38. 계약에서 해제·해지 사유를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효력은 그 계약에서 약정한 내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O , X)

39.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임대차 기간 중 그러한 상태를 유지시킬 의무를 부담하며, 어떠한 상태가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인지는 임대차 목적물의 통상적인 사용방법을 중심으로 하되, 단순히 물리적인 사용·수익 가능성뿐만 아니라, 임대차의 목적과 유형, 거래 관행, 계약의 내용을 통해 드러난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O , X)

40. 임대차계약 종료로 발생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로 발생한 임대인의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차인이 적법한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후에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을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 (O , X)

41.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서 정한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 제639조 제1항의 이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O , X)

42.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한다. (O , X)

43. 매목적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는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선순위 저당권과 함께 소멸하는 이상, 임차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O , X)

44. 주택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그 대항력은 점유 상실 시에 소멸하는 것이지만, 그 대항력이 상실된 이후라도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면 이로써 소멸하였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X)

45.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소유자가 된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대항력의 인정요건이 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된다. (O , X)

4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비용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O , X)

47.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해당 임차주택을 양수함으로써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된 경우에, 그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차주택에 관하여 임차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요건이 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그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O , X)

48. 임대인이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양수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법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위 주택 양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O , X)

4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다면 이는 상가건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O , X)

50.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조합에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필요비는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조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때 조합의 비용상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무에 해당한다. (O , X)

51. 조합과 조합원이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의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명의신탁 사안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의 매매계약 및 조합원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부동산 소유권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었더라도,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동산에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조합에 청구할 수 있다. (O , X)

52.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한다. (O , X)

53.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불법원인의 형성에 관여한 수익자에게 그 급여의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O , X)

54.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불법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수익자와 급여자의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O , X)

55.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불법원인의 형성에 관여한 수익자에게 그 급여의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익자에 대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O , X)

56. 이혼을 원인으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함에 있어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민법 제746조의 입법 취지는 고려되어야 하며,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산분할에 참작할 기여로 평가하는 것은 민법 제746조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O , X)

57. 형사재판에서 고의성 내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민사책임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O , X)

58. 민법 제758조 제1항은 위험책임 법리에 근거하여 공작물 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그 책임을 가중하고 있으나, 공작물 소유자에게 예외 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할 무과실책임을 지운다면 손해의 공평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O , X)

59.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라면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O , X)

60.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막연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그 자체로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도 없다. (O , X)

61.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이후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O , X)

62.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이거나, 확정된 이후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장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O , X)

63. 자녀양육의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 (O , X)

64. 혼인외의 자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인지판결 확정 전 미성년인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O , X)

65. 부자관계는 그 관계 확정을 위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법률적 친자관계이지만, 모자관계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그 관계가 명확히 결정되는 자연적 친자관계라는 것이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바이고, 출산한 모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도 존재한다면, 무효인 대리모계약에 의하여 출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한 대리모를 자녀의 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O , X)

66.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진실한 신분관계를 귀속시키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도 예외적으로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O , X)

67. 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유골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러한 행위가 어떤 사람의 추모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람은 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유골을 훼손한 사람을 상대로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제사주재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O , X)

68. 구체적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해 법정상속분을 수정한 것으로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별 몫을 뜻하고,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O , X)

69.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서, 공동으로 주식을 상속한 수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주식을 공유하게 되고 상속인들 명의로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주식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O , X)

70. 포괄적 유증이란 소극재산을 제외한 적극재산 전체를 의미하는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의 유증을 말하는 것이고,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O , X)

민사소송법

이영민 교수(박문각 전임교수)

1.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여부는 제소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병합심리로 그 소가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소액사건임에는 변함이 없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다.

3.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4. 관할의 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인바, ...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은 부동산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5. 민사소송법 제30조 소정의 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나, ...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하급심 법원에는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7.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한편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직권발동으로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만(민사소송법 제39조), 위와 같이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항고심에서 당초의 이송결정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신청인의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8.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은 ... 그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원심이 그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 어떤 이익도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9.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10. 사망자를 피고로 하여 제소한 제1심에서 원고가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함에 있어서 일부상속인을 누락시킨 탓으로 그 누락된 상속인이 피고로 되지 않은 채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 그 누락된 상속인을 다시 피고로 정정추가할 수 없다.

11. 당사자가 소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12.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정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어 이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13.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당사자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인 원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4. 급부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15.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16.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없다.

17. 주주총회결의 취소와 결의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회사로 한정된다.

18.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19.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20. 비법인 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가 제기되었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22.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23.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법인의 대표자 자격이나 대표권에 있던 흠이 보완되었다면 특별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결정이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대표자는 법인을 위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24.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25.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중 일부의 소송행위만을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 일단 추인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은 이상 그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로 귀착되므로 그 후에 다시 이를 추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6. 소장에 첩용한 부족인지의 가첩에 관한 보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재판장이 소장을 각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즉시항고로 인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부족인지액의 가첩이 있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재판장이 속한 법원은 본법 제446조에 따른 재판의 경정을 할 수 없다.

27. 소장에 일응 대표자의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설령 그 표시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정 표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 그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로지 판결로써 소를 각하할 수 있을 뿐이다.

28.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된다.

29. 말소등기 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이며,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30.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 그 법적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1. 이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2. 전소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고, 더 나아가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존재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다.

33. 직권조사사항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4. 소의 적법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35. 소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6.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며, 비록 소제기에 앞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가 선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가릴 것은 아니다.

37.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8. 별소로 계속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9. 중복제소금지는 소송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배하여 각하를 면치 못하게 된다.

40.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에 대한 판결이나 그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라도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41.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사안에서, ... 원고는 위 계약금반환채권을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행사하다 다시 이를 양수받아 직접 행사한 것이어서 ...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42.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고, ... 거기에는 애초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결을 내린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43.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8조 제1호 소정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4.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45.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풀이하는 것이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고 할 것이다.

46. 피고가 본안 전 항변으로 채권양도사실을 내세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주장 속에는 원고가 채권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본안에 관한 항

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7.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48.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의 시기나 권원 등은 모두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이나 자주점유를 추정하는 징표 즉 간접사실로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시기와 권원을 인정하여야 한다.

49. 토지임대인이 그 임차인에 대하여 지상물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청구한 데 대하여 임차인이 적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 이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임대인이 종전의 청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명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예비적으로라도)를 석명하고 임대인이 그 석명에 응하여 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상물명도의 판결을 함으로써 분쟁의 1회적 해결을 꾀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0.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51.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준비기일에서 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2. 법인에 대한 송달은 같은 법 제64조 및 제179조에 따라서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버리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자도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인에 대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도 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3.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54. 항소 제기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이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위 판결정본의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는 이에 대한 피고의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다.

55.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어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56.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7.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 자백이다.

58.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59.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60. 일단 의제자백으로서의 효과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이후의 기일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으로 되어 공시송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의제자백의 효과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61. 법원은 반드시 감정으로써 필적, 인영 등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

62. 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는 그 제3자만이 자기에 대한 심문절차의 누락을 이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을 뿐이고,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그 제3자에 대한 심문절차의 누락을 이유로 즉시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63.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및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된다.

64.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않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65. 당사자가 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반드시 취하권자나 그 포괄승계인만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제3자에 의한 제출도 허용되며, 나아가 상대방에게 소취하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는 것도 상관없다고 할 것이다.

66. 적법한 소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67. 소취하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여 동의를 거절하면 소취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후에 동의하더라도 취하의 효력이 없다.

68.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피대위자가 알게 된 이상, 그 대위소송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그 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대위자도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아 그 대위소송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69. 소의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적 병합과 구청구의 취하의 결합형태로 볼 것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다음 다시 본래의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에는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70.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이고, 경정대상인 판결 등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의 명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71. 판결 또는 화해조서경정의 신청을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다.

72. 원고가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 없는 경우,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73.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하며 (민사소송법 제498조), 부적법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부적법한 상소를 각하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상소기간이 지난 때에 소급하여 확정된다.

74.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무단 점유자가 점유 토지의 인도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75.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76.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일 경우에는 그러한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77.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78. 채무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된다.

79.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그 강제집행 정지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

80. 가집행으로 인한 집행의 효과는 종국적으로 변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집행으로 금원을 추심하였다 하여도 채권자의 기본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81.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82. 제1심법원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조치는 위법한 것이고, 원고가 이와 같이 위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택적 청구 중 판단되지 않은 청구 부분이 재판의 탈루로서 제1심법원에 그대로 계속되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83.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다가 이에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의 대상청구는 ... 이것이 판결확정 후에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양자의 경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와의 단순병합에 속한다.

84.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을 청구변경의 요건으로 요구함으로써 피고의 보호는 보장되므로 피고의 동의 없이도 취하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본다.

85. 반소가 적법히 제기된 이상 그 후 본소가 취하되더라도 (예비적 반소가 아닌 한) 반소의 소송계속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86.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87.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이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원고들 일부의 소취하 또는 피고들 일부에 대한 소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88.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89.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90.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있어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91.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동피고에 대한 각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송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92.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것으로서 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변호사인 소송대리인과 사이에 체결하는 보수약정은 소송위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에 기한 독자적인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

93.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94.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따라서 보조참가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할 수도 있다.

95. 민사소송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참가의 경우에 그 재판이 참가인에게 미치는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만 발생되고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 간에는 미치지 않는다.

96.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 당해 소송이 계속중인 동안은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97.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이 요구하는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98. 독립당사자참가는 실질에 있어서 소송제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고심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없다.

99. 제1심판결에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하여 참가인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원고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와는 별도로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100.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라고 함은 ... 피고로 되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터잡아 법률 판단을 해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01. 민사소송법 제260조 소정의 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39조의 통상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102.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승계참가의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그 참가인정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03. 소송계속중에 소송목적인 의무의 승계가 있다는 이유로 하는 소송인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의 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그 승계적격의 흠결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결정으로 그 신청을 인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승계인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피인수신청인에 대한 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심리한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인수참가신청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104.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105.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106. 구체적인 어느 특정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제1심 판결선고 전에 미리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제1심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판결선고 후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그 불항소합의를 해제하고 소송계속을 부활시킬 수 없다.

107. ...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108.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109. 원심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모두 인정한 다음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상계 후 잔존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분만을 일부 인용하였는데, ... 상고심에서 원고의 소구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더 나아가 피고의 상계항변의 당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원고 청구가 배척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에 대하여 파기를 면치 못한다.

110. 항소인이 항소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1. 피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 그 뒤에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항소취하는 그 대상이 없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112.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하여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하여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항소 자체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113.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14.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상고를 제기한 때에는 피상고인은 상고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상대방으로 보태어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115.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다.

116. 특별항고가 있는 경우 원심법원은 경정결정을 할 수 없고 기록을 그대로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117. 피고들이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그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외에, ... 청구들은 별소로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118.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119. 확정된 재심판결에 위 조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20.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121. 기판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설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정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122.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 있어서도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상 법

이상수 교수(박문각 전임교수)

제1편 상법총칙

Ⅰ. 상인

1. 상인의 종류
1) 당연상인 :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 자기명의 : 스스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
*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른 경우 실제영업상의 주체가 상인(판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상인이 아님(판례)
2) 의제상인 : 자기명의로 상행위가 아닌 행위를 하는 자(설비상인, 민사회사)
* 변호사, 법무사 - 의제상인 아님(판례)
3) 소상인 :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규정 적용 안됨.
* 자본금 1천만원 미만의 상인으로 회사가 아닌 자

2.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1) 개인상인 : 원칙적으로 개업시 취득하지만 개업준비행위에 착수한 때 인정(판례)
2) 영리법인 : 설립등기시 상인자격 취득
3) 특수공법인(한국농어촌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 상인자격 인정 안됨.
4) 특수법인(농협, 새마을금고, 신용금고 등) : 상인자격 인정 안됨(판례)

Ⅱ. 상업사용인

1. 지배인
1) 선임과 해임 : 영업주 또는 그의 대리인
* 미성년자가 영업의 허가를 얻은 경우 스스로 지배인 선임가능
* 선임과 해임은 등기사항(상업등기의 효력)
2) 자격 : 자연인에 한하며,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음.
* 감사는 이사나 지배인이 될 수 없으나, 이사나 업무집행사원은 지배인 겸직 가능
3) 대리권 :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음.
* 지배인의 대리권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해임할 수 있음.
*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됨(판례)
* 대리권의 남용 : 상대방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영업주가 입증하면 책임 없음 (판례)
4) 공동지배인 : 수인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 행사하도록 할 수 있고, 등기사항임
* 공동지배인의 대리권행사는 공동으로 하지만, 수동대리는 1인이 가능함.
* 대리권의 포괄적 위임은 할 수 없음(판례)
5) 표현지배인 :지점장 등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사용자에게 지배인과 같은 지위 인정됨(지점차장, 지점장대리는 표현지배인 인정 X)
* 공동지배인중 1인의 단독행위 : 표현지배인규정 적용가능(판례)
* 영업소로서의 실체가 있어야 함(판례)
* 재판상의 행위는 인정되지 않으며, 제3자가 악의인 경우 적용 안됨.

2. 부분적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 특별한 수권이 없으면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표현부분적포괄대리권을 갖은 사용인은 인정되지 않음.
* 영업주의 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행위 등)에 대한 대리권은 인정되지 않음
*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규정 유추적용 X.

3.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영업주와 반드시 고용계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4. 상업사용인의 의무
* 경업금지의무 : 의무위반시 개입권 또는 이익양도청구권 인정, 손해배상청구에 영향 없음.
* 겸직금지의무 : 의무위반시 개입권 인정 X

Ⅲ. 상호

1. 상호의 선정과 제한 (제18조 - 제21조)

2. 상호의 등기 및 가등기 (제22조의2)
* 동일지역 상호등기 배척권 : 동일상호(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에 한정(판례)

3. 부정목적 사용금지(23조)
* 등기상호 :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사용시 타인의 부정목적 입증(동일지역 - 부정목적 추정)시 타인의 상호 폐지청구 가능 (손해배상청구에 영향 없음)
* 미등기상호 :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사용시 타인의 부정목적 및 손해발생의 염려 입증시 타인의 상호 폐지청구 가능
* 지역의 동일성 불필요. 타인 상인 불필요. 영업 동일성 불필요.

4. 명의대여자의 책임
1) 책임인정 요건
* 명의사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알고 방치) 허락(판례)
* 거래상대방 선의(중과실 없어야 함)(판례)
* 명의차용인의 행위가 상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가능
* 명의대여자는 반드시 상인일 필요 없음
2) 적용 배제
*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음(판례)
*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음(판례)
*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있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판례)
3) 효과 : 부진정 연대책임관계(채무자1인에 대한 청구나 소멸시효중단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당연 효력이 미치지 않음(판례)

5. 상호의 양도, 폐지, 말소(제25조부터 제27조)

Ⅳ. 상업등기

1. 상업등기 의의 및 절차
1) 의의 : 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을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선박등기는 상업등기 X)
2) 절차 :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등기
* 법원의 촉탁등기 : 회사설립무효 등 소송에 의한 등기, 해산명령과 판결 등기
*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2. 등기의 효력
1) 일반적 효력(상법 제37조, 제38조)
* 제3자 범위 : 국가는 제3자에 포함 X(판례)
* 정당한 사유 : 객관적 사유(판례)
2) 등기의 사실상 추정력 :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된 경우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임 추정(판례)
3) 등기의 공신력 부정 :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불실등기를 믿고 취득하는 계약을 하더라도 무효임(판례)
4) 부실등기의 효력
* 등기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회사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 기준 판정)(판례)
* 제3자의 문서위조 등에 의한 부실등기 : 원칙적으로 제39조 적용 X(판례)
(단, 이를 알고 방치한 경우 : 제39조 적용 O)

3. 변경, 소멸의 등기(제40조)

Ⅴ. 영업양도

1. 의의 : 영업재산 양도(개인법상 거래계약)
 * 영업의 동일성 유지 및 영업재산 유기적일체로 양도 (판례)
 * 영업폐지 후 영업재산 양도는 특별결의 불필요 (판례)

2, 효과
1)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제41조)
 * 경업지역 : 영업활동지역 기준 판단 (판례)
 * 경업금지청구권 : 영업재산으로 전전이전 되며, 양도시 대항요건 필요 (판례)
2) 상호속용과 양수인 책임(제42조, 제44조)
 * 상호의 속용은 주요부분 공통이면 인정(양도인의 사용허락 불요)(판례)
 *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영업상 채권 추급 가능(판례)
 * 상인이 회사의 설립시 영업을 출자한 경우 상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회사의 변제책임 인정(판례)
 * 영업표지나 옥호의 속용시에도 제42조 적용(판례)
 * 영업양도 당시의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에 한정되지 않음(판례)
 * 채무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나 부당이득으로 인한 채무 포함(판례)
 * 영업양도 당시 발생한 채무로써 변제기 도래하지 않은 때도 인정(판례)
 * 양수인과 양도인의 부진정연대채무(판례) ⇒ 양도인 책임 (45조)

제2편 상행위

1. 소멸시효(제64조)
 * 일방적/보조적 상행위 : 상사시효 적용(판례)
 * 새마을 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대출 : 상사시효적용 (판례)
 * 상인의 상품판매대가 : 3년 시효(민법 제163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 10년(판례)
 * 근로자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채권 : 상사시효 적용(판례)
 *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 10년(판례)

2. 매수인의 검사하자통지의무(제69조)
 * 매수인의 과실 불문하고 6월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등 못함(판례)
 * 통지사실 입증책임 : 매수인(판례)
 *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69조 적용 X (판례)
 * 수량지정된 부동산임대차 및 수량지정 부대체물매매: 제69조 적용 X(판례)

3. 대리상
 * 대리상의 여부는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판례)
 * 보상청구권(92조의2)은 대리상과 같이 보호필요한 자에게도 유추적용(판례)

4. 위탁매매인
 * 주선은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함9판례)
 *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이나 물건의 위탁자에 귀속(제103조)
 * 위탁매매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해 위탁자의 환취권 인정(판례)

5.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제135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135조 적용 X (판례)
 *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의 청구권 경합설(판례)
 * 면책약정 유효(불법행위책임은 특별한 의사표시 없으면 인정X : 판례)

6.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제152조)
*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필요(판례)

제3편 회사(주식회사만 정리)

Ⅰ. 회사의 개념

1. 1인회사
* 주주총회 : 1인 의사 결정 가능(판례)
* 영업양도 : 1인 동의로 가능(판례)
* 1인주주인 대표이사 : 업무상 배임죄, 횡령죄 인정(판례)
* 1인주주인 대표이사의 이사보수 결정 유효(판례)
*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된 경우 주주총회 결의 필요(판례)

2. 법인격부인론
* 기존회사의 채무면탈목적 회사설립 : 적용(판례)
* 법인격부인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 확장 X (판례)
* 친자회사간에 완전한 지배관계 아닌 강한 지배력을 가진 경우라도 법인격부인론 적용 부정(판례)
* 채무면탈, 탈법행위 등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법인격부인 인정 (판례)

Ⅱ. 회사의 설립

1. 설립중의 회사
* 정관작성과 발기인의 1주 이상 주식인수시 인정(판례)
*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된 권리의무는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회사에 이전(판례)

2. 변태설립사항 (제290조) : 정관규정없으면 무효
* 재산인수 - 정관규정없으면 제3자 선악불문 무효(판례)

3. 타인명의의 주식청약 : 주식인수계약의 특수성에 따라 실제 주식인수인 판단(판례)
* 명의대여자 동의 O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인수의 당사자는 대여자(판례)

4. 가장납입
* 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 유효(판례)
* 발기인들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인정(판례)
*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금(체당금) 상환청구 가능(판례)
* 납입가장의 경우 인출자금을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더라도 횡령죄 불성립(판례)
* 회사가 청구한 주금상당액 납입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주주임을 주장 가능(판례)
* 납입가장죄,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죄 처벌(판례)

Ⅲ. 주식

1. 주식양도(제336조)
* 정관으로 전면적 주식양도금지 규정은 무효(판례)
* 주주의 투하자본 전면적 회수 금지 약정은 무효(판례)

2. 주권발행전 주식양도 제한(제335조 제3항)
* 회사설립등기후 또는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적용X.
* 회사설립등기후 6월 경과전에 양도되었으나, 6월 경과후에도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의 효력인정(판례)
* 채권담보목적으로 주식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판례)
* 주권발행전 주식의 이중양도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의 우열로 판단(판례)
* 양수인은 지명채권양도에 준하여 양도인의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함) 있을 때 명의개서청구 가능(판례)

3. 명의개서(제337조)
* 명의개서 미필주주를 회사는 주주권 행사자로 인정 X (판례)
* 양도담보권자 명의개서 : 담보권자는 회사에 대한 모든 주주권 행사 가능(판례)
* 주식양도계약해제 : 주식양도인의 주주권 회복, 단 주주권행사를 위해서는 다시 명의개서 필요(판례)
* 형식주주에 불과한 주주임을 용이하게 증명하더라도 의결권행사 거절불가(판례)

Ⅳ. 주주총회

1. 소집(제363조)
* 주주총회 소집 철회나 연기를 위해 이사회결의를 거쳐 대표이사 통지 필요(판례)
* 전원출석총회 : 소집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 유효(판례)
*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제3자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 당사자가 당해소송에서 주장 가능하며, 회사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판례)
* 이사회결의 없이 주주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 : 결의부존재 사유(판례)

2. 주주제안권 : 의결권없는 주식 제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 이상 가진 주주권

3. 의결권행사(제368조 제2항)
1) 의결권대리행사
* 대리권증명 서류 : 원본(판례)
* 위임자나 회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안에도 의결권권 대리행사 가능 (판례)
* 대리인의 자격 : 주주에 한정하는 정관규정 유효(판례)
* 대리권증명 서면을 지참하지 않아도 위임사실 증명가능하면 대리권행사 가능(판례)
2) 의결권불통일행사 : 3일전 통지의 도달필요(판례)

4. 주주총회 결의하자
1) 취소 : 결의내용이 정관위반시 주주, 이사, 감사 소제기
* 주주의 주식양도시 양수인이 승계가능 (판례)
* 다른 주주의 하자사유로 소제기 가능(판례)
* 이사의 사망은 하자의 소 종료사유 임(판례)
* 판결의 효력 : 대세효, 소급효 인정
2) 무효나 부존재 : 소제기기간 제한 없으며, 이해관계인은 소제기 가능
* 법원의 제량기각 인정되지 않음.

Ⅴ. 이사

1. 이사의 선임
* 주주총회결의와 이사의 동의로 이사지위 인정(판례)
*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의 선임의 경우에도 정관에 정한 이사선임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판례)

2. 이사의 해임(제385조)
* 임기의 정함이 있는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정당한 이유 : 주주와 이사 사이의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 신뢰관계 상실로는 부족(판례) / 입증책임은 이사가 부담(판례)

3. 보수
* 급여나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포함(판례)
* 중간정산금은 별도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필요(판례)

4. 대표이사
1) 대표이사 대표권
* 대표권의 제한에 위반한 대표행위와 이사회결의사항으로서 이사회결의가 흠결된 대표행위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무중과실)인 때에는 회사가 대항 X (판례)

2) 공동대표
* 공동대표이사 : 대표권의 포괄적 위임 허용 X (판례)
3) 표현대표이사
* 사장 등의 명칭의 임의사용 : 표현대표이사 적용 X (판례)
* 표현대표이사 인정을 위해서는 회사의 묵시적 명시적 사용 허락 필요(판례)
* 공동대표이사중 1인의 단독대표행위 : 표현대표이사 성립(판례)
* 표현대표이사규정에 있어 제3자의 악의 : 회사 입증책임(판례)
* 이사직을 사임한 자나 상업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 규정 적용 됨(판례)
* 대표이사의 명의로 행위를 한 경우나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 대표이사규정 적용(판례)
* 어음행위의 경우 표현대표이사규정 적용을 위한 제3자 범위 : 어음취득 상대방 또는 제3취득자 포함(판례)

5. 이사 등의 자기거래 제한(제398조)
* 회사에 이해충돌이 없는 거래 : 이사회 승인 필요 없음 (판례)
* 별개 두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자가 일방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나머지 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 제398조 적용(판례)
*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회사 책임 인정(판례)
* 강행규정이므로 이사회의 사후추인 인정 X (판례)

6.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
*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손해배상액 제한 가능(판례)
*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10년의 소멸시효(판례)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서 제3자 : 간접손해를 입은 주주는 포함 X (판례)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소멸시효 : 법정책임으로 10년(판례)
*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에 있어 지시자는 자연인이든 법인인 지배회사든 포함(판례)

7.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제407조)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이사에 한정 (판례)
* 직무집행정지된 이사가 사임하고 후임자 선임되더라도 직무대행자의 권한 당연 소멸 X ⇒ 후임자의 행위는 무조건 무효 (판례)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 만료, 기간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판결확정과 동시에 효력상실 (판례)

Ⅵ. 감사 및 감사위원회
* 감사선임의 의결권 제한 및 자격제한, 임기(조문)
* 감사는 선임결의로 감사지위 취득 X (판례)
*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감사는 둘 수 없음(사외이사 3분의2 이상으로 구성)

Ⅶ. 신주발행

1. 신주인수권(제418조)
* 정관이나 이사회가 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주인수권 양도를 회사가 승인한 경우 효력 O (판례)
* 현물출자자에 대한 신주발행시 주주의 신주인수권 대상 X (판례)
*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지명채권양도방법으로 양도 가능 (판례)
* 주주의 청약 및 납입이 없는 실권주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3자에 처분 가능 (판례)

2. 신주발행 절차 및 효력, 불공정발행과 무효 (조문)
* 무효의 사유 :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유 (판례)
* 신주발행무효의 제소기간 경과후에는 다른 사유로 소제기 불가 (판례)

Ⅷ. 자본금 감소 (조문)

* 이사의 법령위반으로 회사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본금감소 무효판결의 확정유무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Ⅸ. 회계

1. 이익배당 등
 * 이익처분계산서 확정시 배당청구 가능 (판례)
 * 중간배당결정의 수정결의는 인정되지 않음 (판례)

2. 회계장부열람청구권(제466조)
 * 서면으로 이유(구체적) 기재 청구 : 모색적 이유 X (판례). 이유의 첨부자료 불필요.
 * 회계관련서류 : 자회자 회계자료도 포함될 수 있음(판례). 회계장부의 부속서류 포함될 수 있음(판례)
 * 정당한 사유 있으면 거부가능 (판례) ⇒ 주식매수청구자의 열람청구는 가능 (판례)

Ⅹ. 사채

1. 사채발행은 이사회의 권한사항이나 대표이사에게 발행 위임가능(제469조)

2.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조문)
 * 주주배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인수하지 않아 실권된 부분은 새로이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발행 의무 X (판례)
 * 전환사채발행무효 : 신주발행무효의 규정 준용(판례)
 * 전환사채불행 유지청구 : 납입기일까지 가능 (판례)

Ⅺ. 합병

*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 : 합병무효의 소 인정(판례)
* 합병비율의 공정성 : 제반요소의 고려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판례)

Ⅻ. 분할

* 분할후의 회사(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채무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에 존재하는 채무(판례).
* 분할 또는 분할합병 효력발생 전에 발생하였으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에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도 연대책임이 인정(판례).
*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확정 또는 발생한 채무는 연대책임 불인정(판례)
* 분할 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판례)
*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분할책임을 지기로 한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에는 분할후의 회사는 분할회사와 연대책임 부담(판례).
* 분할 후의 회사가 분할전 회사의 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채권자보호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판례).

부동산등기법

김기찬 교수(박문각 전임교수)

1. **[전세권변경, 근저당권변경 등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에 따른 등기실행방법]**
 ① 원칙 : **부기요건** (승낙o : 부기등기 / 승낙x : 주등기)
 ② 예외 : **수리요건** (승낙o : 부기등기 / **승낙x : 주등기로도 수리x**)
 (**예외가 되기 위한 설문의 단어 : "터잡은, ~목적, ~에, ~부"**).

2. **[등기대상]**
 ① 가능 :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10년이상 규정 : 예시적에 불과)**, **벽이 없는 개방형축사**, **실내테니스장**
 ② 불가능 : **연결통로**, **하천(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벽이 없는 버섯재배사**, **해수면 위~**

3.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등기목적의 동일] : 등기할 사항(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이 동일한 경우
 ①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일부는 '**근저당권 설정**'으로, 나머지는 '**근저당권 말소**'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전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등기신청 하는 경우에는 등기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일부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나머지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③ **A 부동산**은 **전부**, **B 부동산**은 **일부 1/2**을 '**소유권 이전**'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등기원인의 동일] :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의 내용 · 당사자 · 원인일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①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일부는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나머지는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서나 판결문 등**에 기록된 **각 등기원인일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여러 **부동산 중 일부**에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하거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④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당사자와 원인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당사자의 동일]
 ① **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동일한 등기의무자**로부터 **여러 동일한 등기권리자**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소유자가 다른** 여러 부동산을 **한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동일 소유자의 여러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여러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에서 **일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에게 **표시변경(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먼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의 **표시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과 이미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부동산**은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먼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마쳐야** 한다.
 ⑤ A 부동산에 대하여는 **갑이 등기의무자·을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B 부동산에 대하여는 **을이 등기의무자·갑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매매나 증여 또는 교환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⑥ **여러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성명**(명칭)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일치**하고,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여러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사무소 소재지)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적용범위]
 ①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법 제7조의2**에 따라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법인의 **합병 · 사인증여 · 규칙 제42조**에 따른 등기는 **법 제7조의3에 따라** 등기신청 **할 수 없으**나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관련 신청사건**은 **전자신청**으로 할 수 있다.

[신청절차 및 실행절차]

① 관련 신청사건은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되, **신청정보**를 작성할 때 "**법 제7조의2에 의한 신청**" 임을 표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접수된 **관련 신청사건 전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③ **보정** 및 **취하**는 그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에 하여야** 하고,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지만 **일부 취하에 의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부 취하를 할 수 없으**며 신청 **전부를 취하**하여야 한다.

④ **일부 부동산에 대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부** 신청을 **각하**할 수 있지만 **해당 등기신청을 제외하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신청사건 **전부**에 대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이유**와 함께 **다른 관할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 제29조 제1호에 의해 각하**하는 것으로 각하결정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에 따른 **경정**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하여야** 하며,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기소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경정하여야** 하고, 등기기록에 **오기나 빠진 부분이 명백**한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⑥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법 제7조의2에 따라 사건을 접수받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하지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처리한 등기소를 기록하지 아니**한다.

4.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승역지,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등을 기록하여야 하는 바,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도 **직권**으로 기록**할 수 있다**.

5.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의 등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하는바,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도 **직권**으로 기록**할 수 있다**.

6.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7. 등기관은 직무권한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성**을 가지지만, 등기소장의 **행정적 지시**에는 **따라야** 하는 것이며, 등기**소장**은 등기관의 **보정명령의 적정여부**에 관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8. 법원의 **신탁종료명령**은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탁종료명령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각하**하여야 한다.

9.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는 단독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0.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허가서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 **토지거래계약허가서** / **재단법인 주무관청허가서** / **공익법인 소유권이전 주무관청허가서**)

11. **환매특약**의 등기신청은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신청과는 **별개의 신청서**로 접수하나, 반드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12.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동시에 신청하되 하나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3. **관공서**가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관공서가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14.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15. 국유재산인 부동산은 권리자의 명의를 '**국**'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하나, **국가철도공단**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일 뿐 **중앙관서가 아니**므로, 국유재산인 부동산의 갑구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에 '**소유자 국**' '**관리청(국가철도공단)**'과 같이 기록할 수는 **없다**.

16. 신청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7.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 **사용자등록번호** 및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다**.

18.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한다.

19. 등기당사자능력은 권리능력자 및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충청북도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일 뿐, **등기당사자능력자가 아니다**(**시·도**가 **등기당사자능력자**임).

20.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등기원인이 매매일 경우 대리인의 인감증명은 **매도용 인감일 필요는 없다**.

21. **재외국민**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처분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는 경우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하거나, 그 위임장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계속적/일시적)체류국 재외공관o / 거주국 공증인x]**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2.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재외공관의 공증에 의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가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3.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24.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로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면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25.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하거나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예: 일본, 대만)을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6. **외국인**인 경우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다**면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국내 공증인x)**을 제공하여야 하지만,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고 이를 제출하는 방법을 취할수도 있다.

27.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첨부정보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를 포함)인 경우에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인증**으로 인감증명을 갈음한 경우 그 증명이나 인증은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이라 할 것이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과 같이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으로 인감증명을 갈음하는 경우 그 인증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가 아니므로 **아포스티유 확인의 대상이 아니다**.

28.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그 위임장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미국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등기관은 그 인증에 **아포스티유 확인이 없음**을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29. 법인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을 **반드시**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30. 법인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반드시**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31. 법인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는 **반드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바,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 없다**.

32. 법인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사원총회결의서**는 **반드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바, 정관 기타 규약에서 이와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 없다**.

33.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및 **사원총회결의서**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여기서의 2인 이상의 성년자는 **반드시 결의서 작성 당시에 날인한 자와 동일할 필요는 없다**.

34.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의 표시**는 **성명**과 **주소**만 기재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채무자**로 되는 경우 등기기록에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35. **가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이 가등기상의 권리자이든 의무자이든 관계없이 그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6. **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

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한 경우,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37.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8.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가 합병 전에 그 회사 명의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는 그 **말소등기원인이 합병등기 전**에 **발생**한 것인 때에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신청할 수 있으며, 말소 원인이 **합병 등기 후**에 **발생**하였으면 먼저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친 후**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9. **제출 사무원**은 **등기신청서 제출** 및 **보정, 취하서 제출, 등기필정보 수령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40. 미성년자인 자 1인의 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고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또는 **이혼하여 상속권이 없는 피상속인의 전처**가 자기가 낳은 미성년자 1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이와달리, 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41. 등기신청의 대위에 있어서는 특정채권이나 금전채권이나 모두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등기관은 무자력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42. 등기관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주소**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번호x**).

43.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대리하여 자기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대리**), 동일한 법무사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할 수도 있다(㊟ **쌍방대리**). 다만, **전자신청**에 있어서는 **자격자대리인만** 할 수 있다.

44.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종류 및 일자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무허가 또는 미등기 건물에 대한 아파트분양계약서는 검인대상이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는 위 규정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45. **협의분할(조정분할, 심판분할 포함)**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상속에 해당되므로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조정조서, 심판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46. 등기관이 **2006. 1. 1. 후(전x)**에 작성된 **매매계약서(판결서x)**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x)**를 신청하는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47. 종중도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받으면 해당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48. 농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49. 합유자의 교체·추가·임의탈퇴 등에 따라 농지에 대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합유지분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50.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신탁종료로 인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위탁자 외의 수익자나 제3자**이고 **신탁재산 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이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51. **등기관**이 **등기신청 없이 단지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는 **없다**.

52. **법무사** 본인이 해당 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자기에 대한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없다**.

53.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없다**.

54.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등기완료 후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55.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나, 등기완료 후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56.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

57.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 제5호의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

58.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전건)와 **매수인을 근저당권설정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후건)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전건과 후건이 동시에 신청된 경우**에는 후건에 매수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전건과 후건이 이시에 신청된 경우**에는 **전건에서 통지받은 매수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전건의 **접수증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는 없다**.

59. **근저당권이전등기**(또는 **전세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자(또는 전세권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정보를 멸실**하여 다른 방법(**확인조서, 확인서면, 공증**)으로 본인임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 하여야 한다.

6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제3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그 서면이 **공정증서**인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61. 자격자대리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62. 외국인으로부터 처분위임을 받은 자가 등기신청을 위임한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자필서명 정보의 등기의무자란에 **등기기록상 명의인**인 **외국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63. 자필서명은 **자격자대리인**이 하단에 **본인 고유의 필체로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자필서명 **이미지를 복사**하여 제공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64. **전자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자격자대리인의 개인인증서 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65. **관공서**가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도 자격자대리인이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 각 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6.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인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은 별도로 자기에 대한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67. 등기를 완료한 후 신청인의 원본 환부의 **청구가 없더라도 반환하여야 하는 서면**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계약서**(매매계약서·저당권설정계약서·근저당권변경계약서·해지증서)
② **수용**(협의성립확인서 또는 재결서)
③ **판결**(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등)
④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규약** 또는 공정증서
⑤ **이혼**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협의서**

68.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유언증서**는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

69. ①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등기기록과 일치**하고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의해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어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7호나목에 따라 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한다.
② 등기의무자가 **외국인**,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의 주소가 신청에 따른 등기가 마쳐질 당시에 잘못 기록되는 등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경정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0.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공유인 뜻×. 합유지분×).

7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고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그 **가압류등기만의 말소 촉탁**은 **각하**하여야 한다.

7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는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가등기만의 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 **각하**하여야 한다.

73. 등기원인이 **신탁**임에도 **신탁등기만**을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의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74. 채권자가 등기권리자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마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아니**한다.

75.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관할 지방법원**")**에 이**

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76.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면 족하고 그 이의사유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77. **각하사유를 간과**하여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각하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78. 소유자가 동일한 수필지의 토지에 **창설적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합필**등기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甲 토지의 저당권은 **토지 전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乙 토지의 저당권은 **소유권의 일부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79. 소유자가 동일한 수필지의 토지에 **추가적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합필**등기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위 두 토지가 1992. 2. 1. 현재 이미 토지대장상 합병**되어 있는 경우라면 합필등기가 **가능하다**.

80.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도로명주소×**)으로 신청정보 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주민등록등·초본**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 상의 주소가 신청정보 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는 **자연인**, **법인 모두 적용**이 있다.

81.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82. **권리자체의 경정**(저당권 → 전세권), **권리자 전체의 경정**(甲 → 乙), **법인**을 **비법인**으로 하는 경정,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경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83.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경정 전·후의 등기의 **동일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할 필요는 없지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84. **경정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실질이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 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리요건**).

85.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데,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86. **甲 - 乙 - 丙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甲이 乙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아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자 하는 때에 현재의 소유명의인 **丙은** 그 말소등기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87. **갑**에서 **을**, 을에서 **병**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병은**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앞서 **먼저 말소되어야 할 등기명의인**일 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갑이 **병의 승낙** 또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을 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하**하여야 한다.

88.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회복등기시를 기준**하여 판별한다.

89. **甲에서 乙에게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후 甲에서 丙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회복함에 있어 **丙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90.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말소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므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말소당시의소유자(종전소유자)**가 등기의무자이고, **현재의 소유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이다.

91. 집합건물인 **1동** 건물 **전부**의 **멸실**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을 첨부정보로서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비율의 합**이 **1을 초과**하거나 **1미만**이라 하더라도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한 위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92.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3. ① **등기토지**의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거나 **"국"으로부터 이전등록**된 소유자의 **주소에 관한 기재가 (일부)누락**되어 그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승소한 채권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토지의 대장이 아니**라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이므로, **대장상 소유자에 관한 등록**

사항이 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94. **개방형 축사**가 건축물대장 생성 당시에는 연면적이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 요구하는 면적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이후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이를 증축하여 연면적이 위 법이 **요구하는 면적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그 개방형 축사에 대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5.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 확인판결**을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에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6.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 비율은 그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하나,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97.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전부**를 **수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권리로 됨을 원인으로 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대지권말소**)를 신청한 후,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98.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x**).

99.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호적부에 "특정일자"가 아닌 "**기간**(00년 00월 상순경)"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어떠한 일자로 특정하여도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한다면, 등기관은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한 당해 상속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100.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및 협의분할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상속을 포기한 자까지 참여**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심판정본**(㉥ 접수증명x)을 제출하여야 한다.

101. (㉥ 현물분할인)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먼저 거칠 필요없이** 심판정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막바로 할 수 있다.

102. 법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 ① 현물분할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할 수 없지만**, ②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상속등기를 먼저 하여야** 한다.

103.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협의**분할이 가능하며,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법정**상속분대로의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104.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는 그 **실질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담당 등기관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분할**로 인한 **경정**등기의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따라서 **종전 상속등기 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의 일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경정등기 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다시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105.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협의**분할이 있는 경우, 등기원인을 '**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은 **협의가 성립한 날**로 한다.

106. **협의**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재협의**로 인하여 **상속인 전부가 교체**된 경우에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공동신청, 재협의분할, 재협의가 성립한 날)와 **새로운 상속등기**(단독신청,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상속인이이 사망한 날)을 하여야 한다.

107. 그러나 공동상속인(A, B, C, D, E)의 명의로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이후 **경매**절차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A)의 **지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중 1인(B)에게 **이전**되었다면, 종전 공동상속인 전원(또는 A를 제외한 상속인들 전원)이 **협의**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108.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을이 사망**(법정**상속인 병, 정**)하여 **병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후 위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하려는 경우,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를 **단독상속한 상속인 병만이 이를 전부 말소할 의무가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 정은 이를 말소할 의무가 없으므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자**는 을의 원래의 상속인 전원이 아니라 **병이라 할 것**이다.

109.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므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110. **상속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위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진정한 상속인이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11. **채권자**의 **대위**신청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경매신청 전**에 **상속인들 전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채권자는 **위 상속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진정한 상속인 명의로의 등기**를 **대위신청**한 후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112. **채권자(근저당권자)**의 **대위**신청으로 상속인 **갑, 을, 병**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친 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고 그 후 순차적으로 상속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각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으나, 이미 **을**과 **병**이 **상속포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권리자를 **갑, 을, 병**에서 **갑**으로 하는 권리자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경정등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이므로,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113. 채권자의 대위 상속등기 후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상속포기**가 있었다면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를 먼저 한 후 경매개시신청**을 하여야 한다.나. **경매개시결정 후**에 **상속포기**가 있었다면 상속포기로 상속인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하거나 상속분이 소급하여 변동된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가 **선행될 필요는 없다**.

114.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이미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위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15.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상속인들의 다툼이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유언검인조서등본**을 첨부한 경우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상속인들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유언유효확인의 소의 승소 확정판결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첨부정보**는 **유언집행자로서의 등기신청의사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언자가 별도의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아 상속인 전원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에는 상속인의 **과반수가 유언집행자로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116.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제3자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칙적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나**, 정당한 말소사유에 의하여 위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상속인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17.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증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18. 그러나 멸실 등의 사유로 이러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자격자 대리인은** 신청서에 등기의무자로 기재된 **유언집행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하고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확인서면** 등의 확인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다.

119. 만일 **유언집행자 전원(A, B, C, D, E)** 중 **과반수인 3인(A, B, C)**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된 **확인정보**는 **유언집행자의 과반수 이상(A, B, C)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유언집행자 전원(A, B, C, D, E)의 것이 첨부**될 필요는 **없**다.

120. 망 갑의 **채권자인 A**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을, 병, 정**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채로**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만일 과반수 **이상(을, 병)**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란에는 "**을, 병, 정, 유증자 망 갑의 유언집행자 을, 병"을 표시**하고 각 그들의 주소 등을 기재하면 될 것이다.

121. **수증자가 여럿**인 **특정유증 또는 포괄유증**의 경우, 수증자 중 일부는 유언집행자와 공동으로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22. **갑**이 **을**에게 **A부동산 전체를 유증**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유증한 A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병에게 증여**하고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A부동산의 소유권을 갑과 병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경우, A부동산 **전체**를 을에게 **유증**하기로 한 **공정증서 자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A부동산 **갑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을**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23. **공정증서**에 의하여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특정유증**한 후에 **유증자 명의로 위 구분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유증자가 사망하여 위 구분건물이 상속재산 중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 **구분건물 자체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하여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은 수증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24.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후에 **유증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이 **멸실**되고 **재건축**으로 **새로 조성된 대지 위**에 **새로운 구분건물이 신축**되어 **유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유언공정증서상의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후 부동산의 **동일성을 소명하는 자료**와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은 수증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25. **유언증서**에 "본인의 유고 시 **자산은 ○○○에게 모두 귀속됩니다**." 라고만 기재하고 **별도로 재산목록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유언자 명의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26.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이러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할 등기원인서면(**사인증여계약서**)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유언집행자 부분이**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나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제공할 **필요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27.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이러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할 등기원인서면(**사인증여계약서 등**)에는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를 **준용**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유언증서**에는 **「민법」 제1068조에 다른 요건**이나 그 밖의 **가정법원의 검인 등 필요한 요건**(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 제1091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128. 사업인정 고시 후 **재결 전**에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거쳐야** 한다.

129. 수용**재결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라도 사업시행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제공하며, **경정된 재결서 등본**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130.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에 불필요한 토지임을 이유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수용의 재결이 실효되지 않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31. 토지수용 **재결이 실효**되었을 때에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32. ○○**시장**이 비록 △△△**도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도 이 사업과 관련한 **수용재결서**에 사업시행자가 "**○○시"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권리자의 명의**를 "△△△도"로 할 수는 없으며, "**○○시"로** 하여야 한다.

133. **수용개시일**이 **토·일·공휴일로 기재**되어 있는 **재결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상 **등기원인일**은 '**재결서상의 수용개시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13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135.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136. **구분지상권**에 있어서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137. **구분지상권**에 있어서 **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타인의 토지위에 2층은 주택, 1층은 점포인 1동의 **건물을 층별로 구분소유 하는 경우에 2층만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1동의 건물을 횡단적으로 구분한 경우에 상층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138.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는 토지에 이미 **다른 용익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 **전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289조의2 제2항의 **승낙의 주체는 '제3자'**이므로 **이미 용익권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거나, **구분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에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양 권리자가 동일인**이라면 선행 권리자 등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은 생략할 수 있다**.

139. 「**도시철도법**」, 「**도로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하수도법**」, 「**수도법**」 「**농어촌정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단독**으로 권리수용이나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제2조).

1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사업시행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사용재결에 의해서는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41. **전기사업자**가 토지의 사용에 관한 **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단독**으로는 물론 소유명의인(등기의무자)과 **공동**으로도 신청할 수 **없다**.

142. 다만 전기사업자와 소유명의인(등기의무자)은 **지상권설정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공동으로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43.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의 전기사업자가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아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44. **도시철도법, 도로법 및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마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그 보다 먼저 마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근저당권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말소하여서는 아니**된다.

145. 1개의 토지를 요역지로 하고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할 경우의 **지역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일괄신청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지역권설정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

146.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는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는바, 등기관의 **착오로 위 판결에 의하여 지역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도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수는 **없다**.

147. 지역권의 등기신청은 반드시 **승역지를 관할 하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액은 **요역지의 시가표준액**이 된다. 또한 **지역권자**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148. **법인**이 **전세권자**인 경우 권리자에 관한 사항에 **취급지점**을 기록할 수는 **없다**.

149. **전세권설정계약서**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존속기간**을 **신청정보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수리한다.

150. **등기된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의 **합의**로 **새로운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갱신의 시기는 **이미 등기된 전세권**의 **시기부터 종기 사이**의 **임의의 일자**로 할 수 있다.
이때 **건물** 전세권은 토지와 달리 **법정갱신**이 인정되므로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후에 새로운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갱신의 시기는 **법정갱신이 이루어진 날(종전 존속시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종기는 **최단 존속기간 1년**과 **최장 존속기간 10년 사이**에서 할 수 있다.

151. **공동전세권자 甲, 乙, 丙, 丁이 준공유**하는 건물전세권을 등기할 때에 그들의 각 **지분을 기록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이를 누락**하였다면 甲, 乙, 丙, 丁은 자신들의 **각 지분을 추가 기록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다만 이러한 경정등기는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152. 건물과 그 대지에 공동으로 전세권등기가 마쳐지고 그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법정갱신**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먼저 신청**하거나, 별개의 신청서로 위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153.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날**이 **전세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보다 선일이라면**, 기존 전세권의 등기명의인과 임차권의 등기명의인으로 되려는 자가 **동일한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에 따른 등기를 **수리**할 수 있다.

154. **갑**과 **을**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인 갑**이 **사망**함에 따라, **임차인 을**이 당해 주택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망 갑의 **상속인(들)**을 **피신청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갑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OOO의 상속인 OOO' 등으로 표시함)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다.

155.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전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기재하여 등기를 촉탁한 때에는 촉탁서상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156. **1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권최고액은 단일**하게 기록하여야 하고, 각 **부동산별·채권자별·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157.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는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의 승낙서** 또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증명하는 서면 등 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58.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근저당권변경계약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할 수는 없다**.

159. 원칙적으로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을 것**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면서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다.

160.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 단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대출완납확인서** 등을 제공할 수는 **없다**.

16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62. **추가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등기필정보**는 **추가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정보**이다.

163. **공장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과 **기계·기구**의 **소유자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서등을 첨부하여도 공장저당권을 할 수 **없다**.

164. 공장저당의 설정등기를 한 후에 기계·기구의 추가나 기계·기구의 일부 멸실 또는 분리로 종전 목록에 기록한 사항이 변경되면 **목록기재변경등기**를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65. **일반저당권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변경계약서와 목록을 제출하여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가 **공동**으로 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기의무자(저당권설정자)가 소유자로서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66. **2012. 11. 15.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후 **2013. 11. 15.** 가등기 권리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2023. 7.**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약완결권은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행사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3. 11. 15.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3. 11. 15.** 위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2023. 7.** 현재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가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 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 할지라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3. 11. 15.** 예약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로 위 일자가 계약일자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제출된 이상, 등기관이 매매예약일인 **2012. 11. 15.**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167. **가등기가처분명령**에 따른 가등기는 일반적인 가등기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므로,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으로** 가등기를 하여야 **하여야** 하며 가등기**촉탁**을 하는 때에는 **각하**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말소도 통상의 말소절차(㊟ 등기신청)에 따라야 하며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168. **가등기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가등기권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69.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다(㊟ 현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x).

17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라도 그 가등기 후에 마쳐진 ①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기, ② **가등기 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③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직권말소할 수 없다**.

171.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인 경우에는 **직권말소 대상통지를 한 후**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말소여부를 결정하며, 비록 이의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등기에 기초한 등기의 신청**이나 촉탁은 **수리**하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기초한 등기의 촉탁**은 **각하**한다.

172.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전세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 후에 **동일한 범위**에 마쳐진 **임차권·전세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수 없다**.

173.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 모든)등기**는 저당권설정의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할 수 없다**.

174.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만을 할 때에도 등기관은 **직권**으로 **당해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법 제94조), 이러한 규정은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6912호)이 시행**(2020. 8. 5.)되기 전**에 **이미 마쳐진 가처분등기**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175.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①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촉탁 : x**
②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촉 : x**

176.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①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촉탁 : o**
②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 o**

177.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등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하여야 한다.

178. **위탁자가 신탁대상인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조세(취득세)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수인이 수탁자 명의로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양수인**(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취득세)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는 없을 것이다**.

179.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강제경매등기, 임의경매등기 등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목적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가를 심사**하여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은 **위탁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80. **신탁등기의 신청**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되,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한 다음 **등기목적란**에 **신탁등기의 등기목적**을 기재하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신탁원부번호**를 기록한다.

181. 신탁재산이 **소유권**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부기등기로 기록**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뿐만 아니라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통하여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신탁 조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182. 등기관이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신탁등기를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183. **공동위탁자(甲, 乙)** 중 **1인(乙)을 단**독수탁자, **甲과 乙을 공동수익자**로 하는 신탁설정 시, 등기신청은 **甲지분에 대하여는** "甲지분전부이전 및 신탁"을 등기목적으로, **乙지분에 대하여는** "乙지분전부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및 신탁"을 등기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184. **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근저당권자 중 1인의 지분만에 대한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고**, **각각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한다.

185.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지상권이전등기x)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다만 수탁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186.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일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사항이 **아니다.**

187. 등기관이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기목적란부터 횡선**을 그어 '**등기목적란**'에 **신탁등기의 등기목적**을 기록하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는 **신탁원부 번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188.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른 **재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189. **담보권신탁의 경우**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 수익자를 변경하는)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0. **채권자**를 위탁자와 **근저당권자로** 기재한 첨부정보(**신탁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는 **담보권신탁등기의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제공하여 부동산등기법의 담보권신탁과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일괄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2027년대비 법원(등기)사무직 시험대비

합격 설명회

▶ 설명회 일자 : 2026년 7월 4일(토) 14시

▶ 설명회 내용 : 1) 채움팀 년간 커리큘럼 및 과목별 학습 방향

2) 법원·등기 단기합격 노하우

3) 26년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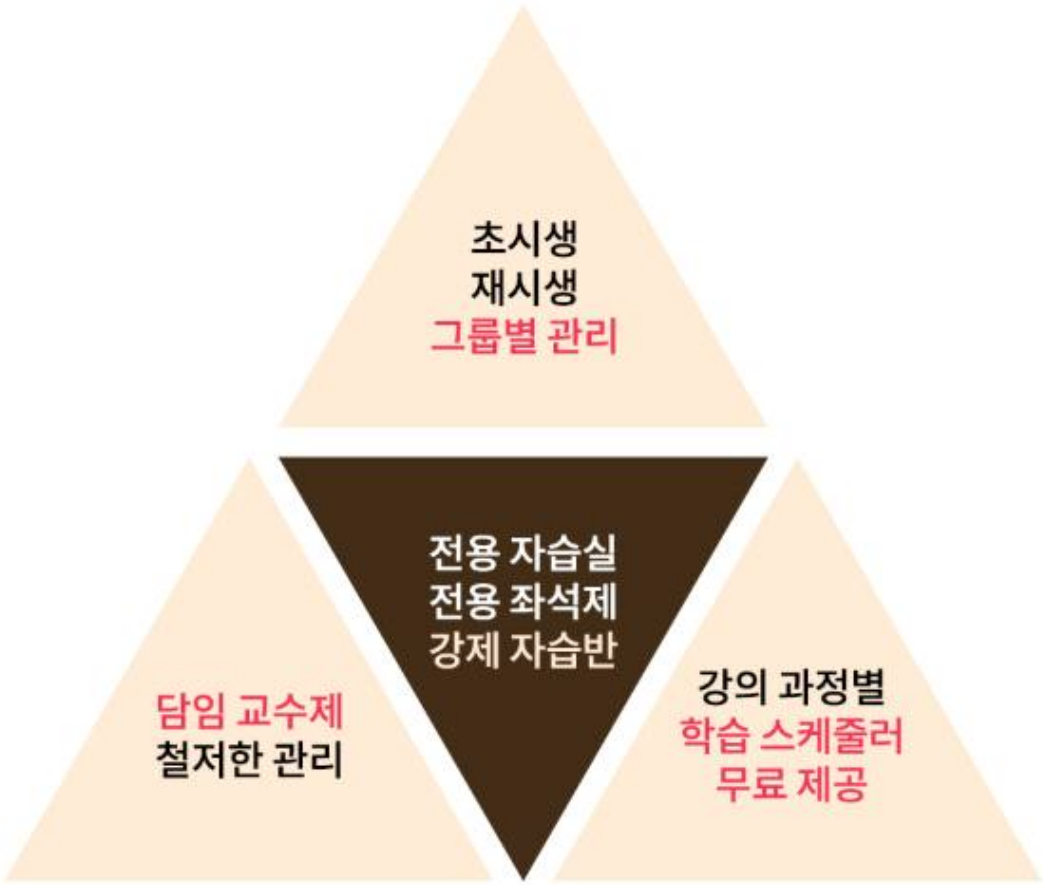
▶ 설명회 장소 : 박문각 써밋타워 301호(학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험일까지 빈틈 없이 채워주는

법원/등기직 연간 커리큘럼

2025년								2026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5법 입문특강		기본 이론			심화 이론			FINAL					
								기출 실전 문제 풀이		핵심 이론 요약		전범위 모의고사 + 중요지문 OX특강	

박문각 이준현 채움팀만의
'3M 관리반' 프로그램



채움 관리반은 합격반 수강생 중 테스트를 통해 별도 선발합니다.

채움 3 Management System

학습 관리	생활 관리	상담 관리
• 진단 평가 실시 • 스케줄러(플래너) 작성 • 모의고사 성적 관리 • 질문/답변의 정례화	• 출결 시스템을 통한 출결 관리 : 07:30까지 등원 • 야간 강제 자습 실시 : 19:00~22:30 엄격한 운영규칙/출결관리	• 담임 교수 상담 • 상담 카드 작성 • 상담의 정례화